



현안분석
2017-08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김 현 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관련산업

● 현황과 관련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미 국

제3절 일 본

제4절 독 일

제5절 영 국

제6절 프 랑스

제7절 싱가포르

제8절 시사점

제3장

주요 외국의 반려동물관련산업 현황과 관련 법제

제1절 개 관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인 발전은 그 국가에서의 동물에 대한 취급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은 경제적 발전만이 그 국가의 발전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며, 생명, 특히 사회적 최약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그리하여 동물,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즉 어떠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 동물을 보호하고 있느냐에 관하여 주요 국가의 경우를 살펴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외국의 현황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우리 현황과의 비교 검토는 그 국가가 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사회문화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제도가 더 우월하다거나 좋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기 시작한 우리로서는 가급적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외국에서 반려동물관련산업과 관련하여 개별적 기준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현황과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법체계를 구성하는 데에 적절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이며, 반려동물관련산업과 관련하여 현황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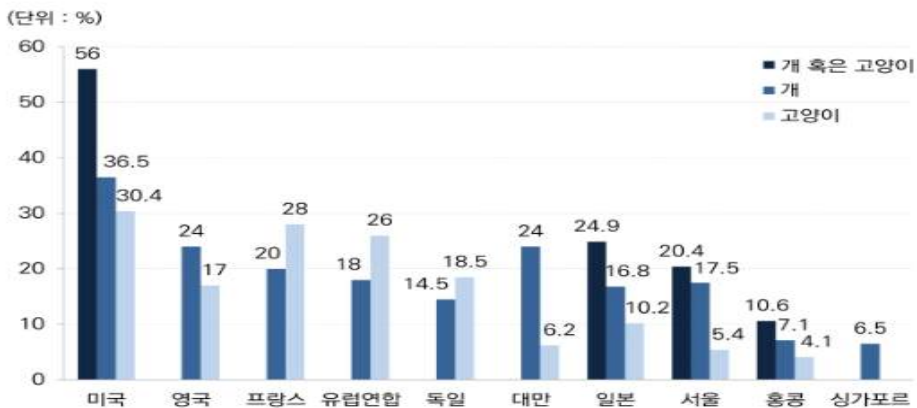
런 법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급적 현황과 관련 법제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현황 또는 법제를 위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제2절 미국

I. 현 황

미국은 세계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반려동물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이하 APPA)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국 가정은 전체 미국 가정의 68%(8,460만 가정)에 육박하며, 이는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던 1998년 56%와 비교하면 1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인 Ibisworld의 보고서는 미국 반려동물의 수가 지금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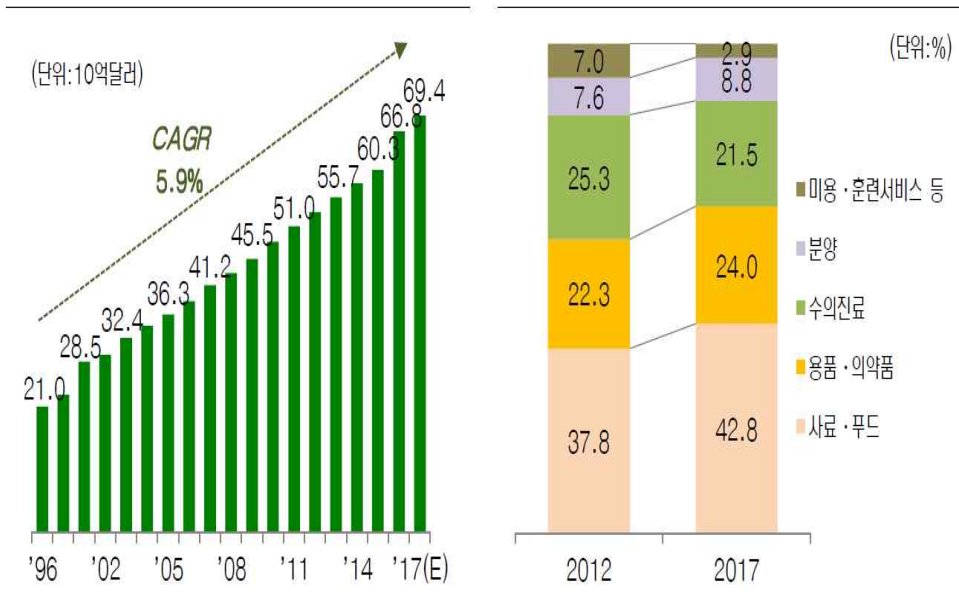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가(도시)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자료 : 미국(AVMA), 영국(PFMA), 유럽연합(FEDIAF), 일본(JPFA), 타이완(행정원 농업위원회), 홍콩(HKCSO), 싱가포르(REACH)의 편집자료를 유기영,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22, 2017.1.19, 12면에서 재인용.

개를 기르는 경우는 6,020만 가구로 전체 가구(1억2,582만 가구)의 48.2%로 가장 많고, 고양이는 4,710만 가구(전체 가구의 37.7%)이다.⁴⁶⁾ 이러한 막대한 수의 반려동물로 인하여 반려동물관련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는데(1996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성장률 5.9%), 그 규모는 2016년 말 현재 668억 달러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말에는 69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⁴⁷⁾ 미국 반려동물 시장 품목 및 산업별 시장점유율은 반려동물 사료시장, 수의사·병원 의료시장, 서비스 시장, 동물 판매시장 순이다.

〈반려동물관련시장의 규모 및 산업규모의 비중〉



자료: 미국 APPA(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2017)

자료: 미국 APPA(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2017)

자료 : APPA자료를 황원경, 앞의 보고서, 10면에서 재인용.

46) 황원경, 앞의 보고서, 9면.

47) 황원경, 앞의 보고서, 9-10면.

〈2016/2017 반려동물관련산업 실시출액의 세부 내용⁴⁸⁾〉

	2016년	2017년(추정)
반려동물 식품	280억 2300만 달러	290억 6900만 달러
반려동물 용품 / 일반의약품	140억 7100만 달러	140억 9300만 달러
수의학적 관리	150억 9500만 달러	160억 6200만 달러
살아 있는 동물의 구입	20억 1000만 달러	20억 100만 달러
기타 서비스	50억 7600만 달러	60억 1100만 달러

* 기타 서비스: 미용, 숙박, 훈련,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운동, 산책 등이 포함됨.

* 반려동물 보험은 '수의학적 관리' 항목에 포함됨.

이러한 산업적 발전에 따라 미국은 반려동물관련산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분류(NAPCS)⁴⁹⁾ 상의 반려동물관련산업 유형⁵⁰⁾〉

유 형		내 용
반려동물 관리업 (비의료)	미용, 훈련, 숙박, 장례	○ 동물, 주로 반려동물을 위한 비의료적 관리 - 포함 사항: • 미용, 훈련, 숙박, 장례 - 제외 사항: • 반려동물 생산 • 동물 의료 서비스 • 마취 후 실시되는 반려동물 미용

48) APPA, Pet Industry Market Size & Ownership Statistics,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press_industrytrends.asp (최종검색일 2017.11.17.).

49) 북미제품분류체계(North American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통계청이 NAICS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2월부터 개발해온 수요 중심의 제품 분류체계를 말한다. 각 산업 분야에서 생산, 거래되는 최종 결과물을 신고(보고) 단위로 정의, 구분, 분류하며, 제품이 사용되는 방식, 또는 일차적 목적을 위해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50) 미국 통계청,

https://www.census.gov/eos/www/napcs/finalized/web_81291_final_reformatted_edited_US082208.pdf(최종검색일 2017.11.17.).

유 형		내 용
	기타 관리업	○ 미용, 훈련, 숙박, 장례 서비스를 제외하고 동물, 주로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비의료적 관리 - 포함 사항: •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개 산책 시켜주기, 동물 보호시설, 동물 식별과 표식 제공 서비스 등
	반려동물 미용업	○ 반려동물의 외관과 위생을 개선 - 포함 사항: • 털 깎기와 면도, 손톱 다듬기, 털과 귀, 이빨 세척 등 - 제외 사항: • 마취 후 실시되는 반려동물 미용
훈련업	일반동물	○ 동물이 지시를 따르고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훈련 - 포함 사항: • 일반적인 복종 훈련, 경비견, 안내견 등 특수한 역할에 관한 훈련 • 동물이 경주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
	경주용 동물	경주마나 기타 경주용 동물의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 제공
위탁 관리업	일반동물	○ (반려동물을 제외) 숙박, 음식을 제공하고 운동을 시키는 등 동물을 하루 이상 관리(예시: 말, 경주견을 위한 숙박 서비스) - 제외 사항: •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 하루 이상 관리하는 것
	반려동물	○ 숙박, 음식을 제공하고 운동을 시키는 등 반려 동물을 하루 이상 관리 - 제외 사항: •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 하루 이상 관리하는 것
	반려동물 장례업	○ 죽은 반려동물이나 기타 동물을 사람이 사망한 이후 실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 - 포함 사항: • 장례 개별절차 계획과 조정, 죽은 동물의 몸 관리, 유해 처리

반려동물관련산업의 시장에 대하여 미국 펫리더십위원회(Pet Leadership Council)는 반려동물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영향은 약 2210억 달러 이상으로, 2015년 기준 미국에서 130만 개의 유급 일자리를 만들고 급여, 수당 등 600억 달러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투입-산출 모형을 적용한 결과 반려동물 산업에서 발생한 지출액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인 영향으로, 산업체가 공급망에서 사용한 지출액을 간접적인 영향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직·간접적 영향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산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효과를 유발효과(induced effects)로 본다.⁵¹⁾

또한, 반려동물관련산업 합동위원회(Pet Industry Joint Advisory Council) 또한 자체 보고서에서 일자리 인원수(headcount jobs)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은 급여(salary), 임금(wage), 수당(benefits)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015년 기준 반려동물관련산업 일자리는 총 130만 7,168개, 근로소득은 604억 9647만 9,000 달러에 이른다고 집계하였다.⁵²⁾

II. 관련 법제

미국 연방 또는 각 주에 반려동물관련산업에 관하여 완결적인 형태로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개별 산업별로 법령들이 산재하고 있고 각 주마다 규율을 달리한다.

1. 생산 및 유통

우선, 반려동물 판매점, 브로커, 연구시설에 제공할 동물을 기르고 판매하는 시설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농무부 동식물검역국(APHIS)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⁵³⁾ 또한, 인터넷이나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없는 방식으로

51) 미국 펫리더십위원회, New Study: Pet Industry is Economic Powerhouse,

<https://petleadershipcouncil.org/press-releases/new-study-pet-industry-is-economic-powerhouse> (최종검색일 2017.10.31.).

52) 미국 반려동물관련산업합동위원회, Economic Impacts of the Pe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http://pijac.org/sites/default/files/pdfs/PetIndustryImpactsBriefingPaper2015.pdf> (최종검색일 2017.10.31.).

53)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국, Questions and Answers: Regulation of Dog/Cat Breeders and Dealers, Animal Care February 2014,

반려동물을 소매 판매하는 시설도 위 검역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⁵⁴⁾

그러나 소비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보고 건강 상태와 인도적인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소매판매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반려동물 소매판매점”(retail pet stores)은 “판매자, 구매자, 판매되는 동물이 물리적으로 만나 구매자가 동물을 구입하기에 앞서 해당 동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말하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반려동물 소매판매점”에 해당되는 곳은 허가취득 요건이나 동물복지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요한 것은, 당국의 허가 또는 검사에 대한 강제가 없을 뿐이며, 동물보호법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대중에게 전시되는 동물, 생물의료 목적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 상업적으로 이동되는 동물로 살아 있는 모든 동물에 적용되기 때문에⁵⁵⁾ 여전히 공공감시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⁵⁶⁾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생산자에 관련된 법률은 약 25개 주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콜로라도 주의 「반려동물 관리 및 시설법(Pet Animal Care and Facilities Act)」, 캘리포니아 주의 「Polanco-Lockyer 반려동물생산보증법(Pet Breeder Warranty Act)」, 인디애나 주의 「상업적 반려견 생산자 규정(Commercial Dog Breeder Regulation)」 등을 들 수 있다.⁵⁷⁾ 이들 25개 주에 마련된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생산자 관련 법률은 판매 대상인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 내지 동물복지가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https://www.aphis.usda.gov/publications/animal_welfare/content/printable_version/faq_animal_dealers.pdf (최종검색일 2017.10.31.).

54)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국, Retail Pet Store Regulation,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animalwelfare/sa_awa/ct_retail_pet_rule (최종검색일 2017.10.31.).

55)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국, Questions and Answers: Retail Pet Store Final Rule, Animal Care December 2013, https://www.aphis.usda.gov/publications/animal_welfare/2013/faq_retail_pets_final_rule.pdf (최종검색일 2017.10.31.).

56) 미국 연방규정 포털, Animal Welfare; Retail Pet Stores and Licensing Exemption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3/09/18/2013-22616/animal-welfare-retail-pet-stores-and-licensing-exemptions> (최종검색일 2017.10.31.).

57) 미시건대학교 동물법률·역사센터,

<https://www.animallaw.info/topic/table-state-commercial-pet-breeders-laws> (최종검색일 2017.10.31.)에서 다양한 법률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 각 주의 법률에서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물론 각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20마리” 이상의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취미로 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구분하여 “생산자(breeder)”라 칭하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매판매점인 펫숍(pet shop)이나 동물구조단체, 숙박시설 등에는 이들 상업적 생산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상업적 생산자들에게는 각 주의 법률이나 농업부, 동물보건부 등 행정청이 마련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생산시설의 허가요건에는 시설관련 요건 외에 먹이 공급, 동물의 운동, 수의학적 관리, 생활환경, 번식 주기 등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생산자가 한 번에 보유할 수 있는 동물의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다.

2. 식품 및 용품 제조

(1) 식품 관련

반려동물 “식품”에는 사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되며, 간식, 껌, 뼈, 장난감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제조업체가 제품 라벨이나 광고에 동물용 식품으로 명시하거나 동물에 영양학적 가치가 있다고 밝힌 (동물의 섭취가 가능한) 제품은 반려동물 식품으로 간주한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FDA), 농무부(이하 USDA), 각 주 정부, 미국 사료협회(이하 AAFCO)⁵⁸⁾ 등이다.⁵⁹⁾ 각 행정주체의 역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FDA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법인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근거하여 제품 안전성, 생산 시설의 위생, 제품 라벨의 표시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식품안전현대화법(The Food

58) 각 주의 농업부는 미국 사료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Feed Control Officials, 줄여서 AAFCO)를 통해 협력하여 유통되는 사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59) 미국 사료협회, <http://petfood.aafo.org/Registration-Licensing> (최종검색일 2017.11.08.).

Safety Modernization Act)」⁶⁰⁾과 「동물용 식품의 예방관리 규칙(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반려동물 생산시설의 cGMP, 원료 관리를 포함한 안전관리 수준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①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반려동물용 식품은 FDA의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 ② 캔 포장된 반려동물 식품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며(21CFR21),⁶¹⁾ ③ “제품표시”에 있어서도 동물용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명, 중량, 제조업체명과 소재지, 성분 표시를 관리한다.

USDA의 경우, FDA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 권한은 없지만,⁶²⁾ 다양한 반려동물 식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물용 식품 제조 시설의 등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반려동물 식품도 포함하고 있다.⁶³⁾ 이들 프로그램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우수제조기준(GMP)에 맞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는 실무부처인 농업마케팅서비스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이 FDA의 수의의약품 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와 협력한다.

한편, 각 주의 농업부는 반려동물 식품 제조업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즉 관할지역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식품과 간식의 제조업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각 주 농업부에 등록해야 하는데,⁶⁴⁾ 주에 따라 반려동물 식품 표시, 시설 위생 관리, 제품 성분, 영양 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60) 미국 FDA 동물용 식품관리 가이드,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61884.pdf> (최종검색일 2017.11.08.).

61) 미국 FDA 반려동물 식품관리 규정,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PetFood/default.htm> (최종검색일 2017.11.08.).

62) 축산동물의 사료는 USDA가 규제하나, 반려동물 사료와 식품은 FDA와 각 주 농업부가 규제한다.

63)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국,

<https://www.ams.usda.gov/services/auditing/feed-verification> (최종검색일 2017.11.08.).

64) 미국 각 지역별 반려동물 식품제조업체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AAFCO자료 참조

(http://www.aafco.org/Portals/0/SiteContent/Regulatory/State_Regulatory_Requirement_Summary.pdf?v2 최종검색일 2017.11.08.).

마지막으로, AAFCO는 위에서 언급한 “제품표시”와 관련하여 상업용 사료의 라벨 표시, 판매, 제조에 관한 모델 법률과 모델 규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각 주는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채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식품 판매에 관한 연방 요건도 마련되어 있으나 각 주마다 상이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AAFCO는 매년 반려동물 식품의 제조 및 라벨 표시에 관한 요건에 관한 자료를 발행하는데,⁶⁵⁾ 해당 자료에는 모델 법률과 규정, 동물용 사료에 사용이 승인된 전체 성분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2) 용품 관련

반려동물 “용품”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해물질 중 특히 살생물제(biocide)로 간주되는 다양한 제품, 즉 벼룩, 진드기 제거용 목걸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용 샴푸, 연고(salve)와 같은 제품과 수족관에 사용되는 일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해충 예방, 제거, 퇴치, 약화”와 같은 사용 목적이 명시되는 한 “성분과 상관없이” 살충제로 간주된다. 벼룩이나 진드기 파우더, 목걸이와 해당 용도가 명시된 샴푸, 미용 보조용품, 수질 정화제, 조류 관리 용품, 개와 고양이의 행동 교정 용품 중 일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살생물제에 해당되는 반려동물 제품은 환경보호청(EPA)과 판매할 주에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식품과 마찬가지로 각 주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제품에 등록 수수료를 부과한다. 위험 가능성이 최소인 살충제는 EPA 및/또는 각 주의 요건의 부과 요건 중 일부가 면제되는데, 이러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분이 면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장난감”의 경우, 소비자제품위원회(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가 관장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안전 요건 외에 반려동물 용품으로서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 대형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반려동물용 장난감의 안전성과 내구성 기준을 아동용 장난감 요건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적용한다.

65) <http://www.aafco.org/Publications> (최종검색일 2017.11.08.).

“의류” 등과 같이 식품이나 살생물제 용품 이외의 반려동물 용품은 “제품표시”, 즉 성분 등에 관한 라벨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관리한다. 미용 보조용품과 같은 반려동물 화장품(pet cosmetics) 등은 의약품, 식품, 살충제가 아닌 이상 FDA가 관리하지 않는다(예컨대, 벼룩이나 진드기 억제에 관한 강조표시가 없는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제품은 소매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전 또는 성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와 달리 규제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에 관한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APPA)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색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⁶⁶⁾

3. 서비스

(1) 미용

반려동물 미용사 자격은 각 주 정부의 관리에 맡겨져 있다. 즉, 지역마다 자격취득의 의무화 여부와 세부 여건이 상이하다. 다만, 자격요건에는 일반적으로 미용 공간, 미용 장비, 동물 털 건조용 케이지, 운동 공간, 시설 내부 장비 등에 관한 요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반려동물 미용사 교육은 자격증을 보유한 미용사가 견습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직업학교(career schools), 지역 전문대학(communitary colleges)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⁶⁷⁾⁶⁸⁾

66) 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APPA) 홈페이지,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law/lawlibrary_article.asp?topic=62 (최종검색일 2017.11.20.).

67) Professional Pet Grooming License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http://study.com/articles/Professional_Pet_Grooming_License_and_Certification_Information.html 참조 (최종검색일 2017.11.20.).

68) 대표적인 전문미용사 직업학교로서 Institute of Technical Arts(플로리다)가 있으며(반려동물 미용사 교육과정 - <https://youtu.be/liKMSuR5Grg>), 노스쇼어 전문대학(North Shore Community College)에는 동물관리 전문가(Animal Care Specialist) 과정에서 애견 산책, 훈련, 미용 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 직업학교인 펜 포스터

반려동물 미용에 대한 민간 자격증은 전국 애견 미용사협회(National Dog Groomers Association of America, NDGAA)가 발행하는데, 미용업계에서 자율규정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며⁶⁹⁾, PetSmart, PETCO 등 대형 업체에서는 반려동물 미용사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미용업에 관한 규범을 두고 있는 주의 관련 규범 동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	규정
캘리포니아 주 ⁷⁰⁾	2012년 1월 반려동물 미용업과 미용사의 요건, 등록을 의무화한 법안 발의(SB 969) : 반려동물 미용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수의학협회(Veterinary Medical Board)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협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
콜로라도 주 ⁷¹⁾	주 농업부에서「반려동물 관리와 시설의 행정·집행에 관한 규정」(8 CCR 1201-11) : 반려동물 미용 시설, 미용사, 미용 시 사용하는 용품에 관한 규정
뉴욕 주 ⁷²⁾	- NY Agri & Mkts L §353-E : 반려동물 미용시설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 - 반려동물 미용사, 미용업체 등록, 자격 취득에 관한 상원 법안 S1569A 발의 ⁷³⁾
로드아일랜드 주 ⁷⁴⁾	2013년, 애견 미용사 자격취득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뒤 업계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2017년 3월, 당시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재발의 : 반려동물 미용시설의 정의, 해당시설의 등록 의무화, 무허가 운영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직업학교(Penn Foster Career School)에서는 온라인으로 미용훈련과정을 제공한다.

<https://www.northshore.edu/academics/programs/asd> (최종검색일 2017.11.20.) 및

<https://www.pennfoster.edu/programs-and-degrees/veterinary-studies/pet-grooming-certificate> (최종검색일 2017.11.20.)

69) 미국 반려동물산업 합동 자문위원회, <https://pijac.org/PPGSA-Standards> (최종검색일 2017.11.20.).

70) 캘리포니아 주정부,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120120SB969 (최종검색일 2017.11.20.).

71) 콜로라도 주정부,

<https://www.sos.state.co.us/CCR/GenerateRulePdf.do?ruleVersionId=5825&fileName=8%20CCR%201201-11>(최종검색일 2017.11.17.).

72) 뉴욕 주 농업부,

https://www.agriculture.ny.gov/AI/AILaws/Article_26_Circ_916_Cruelty_to_Animals.pdf (최종검색일 2017.11.20.).

73) 뉴욕 주정부,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7/s1569/amendment/a> (최종검색일 2017.11.20.).

74) 로드아일랜드 주정부, <https://legiscan.com/RI/bill/H6054/2017> (최종검색일 2017.11.20.).

(2) 훈련

현재 반려동물의 훈련에 관한 연방이나 각 주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맹인견 등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동물의 훈련에 관한 규정은 주 단위로 마련되어 있다.⁷⁵⁾

(3) 숙박

미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pet sitting, pet walkers, pet boarding 등으로 불린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초로 반려동물 숙박시설에 관한 「보건안전규정(Health & Safety Code)」을 마련하였는데, 개와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을 4마리 이상 돌보는 업체의 시설과 해당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미용 서비스, 위생 요건, 동물 관리 요건,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⁷⁶⁾

(4) 장례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보호청은 반려동물 화장 시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고품폐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며, 그 외 장례 절차나 화장에 관한 의무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⁷⁷⁾ 반려동물 화장에 관한 업계 자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⁷⁸⁾ 대표적인 주의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75) 미시건대학교 동물 법률·역사센터,

<https://www.animallaw.info/topic/table-state-assistance-animal-laws> (최종검색일 2017.10.31.).

76) 캘리포니아 주 보건안전규정,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520160SB945 (최종검색일 2017.11.08.).

77) 미국 환경보호청,

<https://publicaccess.zendesk.com/hc/en-us/articles/212071007-What-are-the-EPA-regulations-for-crematories-and-pathological-incinerators> (최종검색일 2017.11.08.).

78) 국제반려동물 화장협회, 북미화장협회의 공동표준,

http://c.ybcdn.com/sites/www.cremationassociation.org/resource/resmgr/about_cana/standards_of_practice_for_th.pdf (최종검색일 2017.11.08.).

주	주요내용
뉴욕 주 ⁷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구 이상의 반려동물을 매장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지 규모, 묘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금 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적용 - 반려동물 묘지와 화장 시설 운영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2년마다 수수료 납부 의무화 - 이와 함께 환경보존법 제27조(27-0701), 고체폐기물 관리법도 준수 필요
캘리포니아 주 ⁸⁰⁾	2007 캘리포니아 보건안전규정 제6장 반려동물 매장(Health and Safety Code PART 6. PET CEMETERIES) : 매장 용지의 사용 요건, 반려동물 소유주와의 계약 체결과 해당 기간 만료 후 사체 처리, 운영비에 관한 규정 등
오하이오 주 ⁸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 시 대기관리에 관한 허가 취득 필요 - 사체는 고�형폐기물로 간주되므로 해당 폐기물의 소각장 설치허가를 취득하고 매년 운영허가 취득 필요 - 화장 후 재를 동물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경우 고�형폐기물 소각, 연간 운영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수 있음 - 폐수 처리가 필요한 시설인 경우 허가 필요

(5) 의료

미국은 “수의사-보호자-동물관계(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 VCPR)”의 개념을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치료의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 국가로 유명하다.⁸²⁾ 즉, 정기적으로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할 때 이와 같은 관계가 수립되며, 대부분의 주가 이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만 동물을 진단, 치료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이력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79) 뉴욕 주정부, <https://www.dos.ny.gov/licensing/lawbooks/PET-CEM.pdf> (최종검색일 2017.11.08.).

80) 캘리포니아 주정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HSC&division=8.&title=&part=6.&chapter=&article= (최종검색일 2017.11.08.).

81) 오하이오 주 환경보호청,

http://ohioepa.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1077/~/ohio-epa-regulations-and-pet-crematory-business (최종검색일 2017.11.08.).

82) 미국 수의학협회,

<https://www.avma.org/KB/Resources/Reference/Pages/VCPR.aspx> (최종검색일 2017.11.20.).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이 관계를 종료하고 반려동물이 다른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물치료 시설은 각 주 정부가 관리하는데, 운영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수의학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각 주의 법과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주가 이 지침을 토대로 동물 의료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⁸³⁾ 2017년 8월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한 33개 주가 동물치료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는데, 위생 요건, 동물 보관 요건, 수술 시설에 관한 기준, 건물 유지보수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⁸⁴⁾

치료시설과 수의사에 관한 규율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의사의 경우 수의학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가 지정한 수의학대학에서 4년 과정의 수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특정 전공(생물학, 유전학, 미생물학, 동물학 등)의 학사 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수의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수의사면허와 수의사 진료활동(veterinarians practice)은 각 주 정부가 정한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관리된다.⁸⁵⁾

(6) 보험

미국의 반려동물 건강보험 또한 재산, 손해보험이며 건강보험이 아니다. 반려동물은 법률상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보험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각 주의 보험부(Department of Insurance)가 사전에 승인한 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보험부는 금리 정책과 보험 내용이 공정하고 정직한지,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를 확인한다. 보험은 인가 보험과 비인가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주 보험국에 정식 영업허가를 얻지 않고

83) 미국 수의학협회,

<https://www.avma.org/KB/Policies/Pages/Principles-of-Veterinary-Medical-Ethics-of-the-AVMA.aspx>
(최종검색일 2017.11.20.).

84) 미국 수의학협회, <https://www.avma.org/Advocacy/StateAndLocal/Pages/veterinary-facilities.aspx>
(최종검색일 2017.11.20.).

85) 미국 각 주의 수의학서비스 관련 법규,

<https://www.avma.org/Advocacy/StateAndLocal/Resources/Pages/State-Legislative-Resources.aspx>
(최종검색일 2017.11.20.).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능력을 상실 하였을 때 주 보험국은 주 내의 주민이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반려동물 보험을 별도로 관리하는 연방 규정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4년 9월 30일,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기본요건을 미국 최초로 법으로 규정(AB 2056)하였다.⁸⁶⁾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사는 배상 혜택, 선제 조건과 같은 보험약관의 기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30일 이내에 무료(전액 환불)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사는 공동보험 약관, 대기기간, 공제조항 등 보장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소비자보호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구매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 존재한다. 즉,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을 통칭하는 소위 ‘레몬법(Lemon Law)’에 대응하여 2017년 현재 22개 주에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구매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강아지 레몬법(Puppy Lemon Law)”이 마련되어 있다. 이 법은 반려견 거래 후 질병발생 및 폐사 사고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강하고 결함이 없는 반려견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법이며, 반려견의 질병발생 및 폐사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생물의 특성상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질병에 대한 유추해석과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⁸⁷⁾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반려동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특정 정보를 명시하고, 소비자가 병든 동물을 구입한 경우 구제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판매자가 동물의 복지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②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판매자의 허가등록 정보, 동물의 출생증명서나 수의사 진찰 내역 등이 포함된다. ③ 대부분

86)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AB2056 (최종검색일 2017.11.20.).

87) 허민영, 앞의 보고서, 44면. 이 보고서 45-49면 이하는 미국 21개 주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통하여 피해유형과 피해보상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반려견에 적용되나 주에 따라 고양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곳도 있으며 뉴햄프셔 주에서는 페릿까지 포함된다. ④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주에서는 생산자(breeder)가 직접 판매하는 동물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⑥ 지역에 따라 구입 후 일정 시일 내에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액 환불하거나 다른 동물로 교환하고 치료비용을 배상할 수 있다.⁸⁸⁾

제3절 일 본

I. 현 황

일본에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대략 1985년 경 부터라고 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동물 관계자 일부는 의식적으로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애완동물(pet, 이하 페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⁸⁹⁾

일본은 2016년 기준 전체가구(5,581만 가구)의 14.2%(790만 가구)가 988만 마리의 개를, 9.9%(554만 가구)가 고양이 985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⁹⁰⁾

주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사육되는 마리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수명연장과 가족화 등을 배경으로 1마리당 소비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矢野經濟研究所)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페트관련시장은 연 1% 정도의 비율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1조4689억 엔, 2016년 1조4900억 엔, 2017년 1조5000억 엔(추정)이며, 그 내역을 보면 푸드(food)류가 약 30%, 페트용품이 약 20%, 페트판매와 살롱, 의료, 보험 등의 서비스가 약 50%를 차지한다.⁹¹⁾

88) 미시건대학교 동물 법률·역사센터,

<https://www.animallaw.info/topic/table-pet-purchaser-protection-acts> (최종검색일 2017.10.31.).

89) 강영기,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 10. 13, 92면.

90) 一般社団法人 페트푸드협회(ペットフード協会), 「2016年 全国犬猫飼育実態調査」, 2017을 황원경, 앞의 보고서, 10면에서 재인용. 이 수치는 15세 미만의 아둥보다는 많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는 적은데, 절대적인 숫자는 매우 많은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펫산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개의 시장으로 나뉜다.⁹²⁾

① 펫푸드 소매시장

- 전년도 대비 102.8% 증가한 4,735억 엔(2015년도)으로 추정(캣푸드 시장이 확대)

② 펫용품 소매시장

- 전년도 대비 100.1% 증가한 2,505억 엔(2015년도)으로 추정(펫시트, 고양이모래(猫砂), 샴푸 등 품목이 다양)

③ 펫판매와 서비스분야

- 서비스분야는 사육보조서비스(헬스케어로서 의료, 개호), 펫보험, 펫시터(pet sitter), 공생 서비스(공생주택, 펫호텔, 펫장례서비스), 오락서비스(펫파크, 도그카페, 캣카페), 정보서비스(인재육성, 넷쇼핑, 펫관련잡지 등) 등 다양
- 전년도 대비 101.2% 증가한 7,480억 엔(2015년도)으로 추정(인구동태와 주거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사육마리 수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상황)

일본의 반려동물 기성시장(既成市場)으로 펫푸드(ペットフード), 펫용품(ペット用品), 펫도매(ペット卸売)가 있다면, 신흥시장(新興市場)으로는 펫주택(ペット共生型住宅 등), 펫보험(ペット保険), 펫미디어(마케팅, 웹미디어, 펫관련 잡지 등 펫미디어), 기타 서비스(その他サービス)가 있다. 기타 서비스로는 노견홈(老犬ホーム), 펫장의(ペット葬儀), 기타 신흥 서비스가 있다. 신흥시장의 기호품에 속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로 펫공생주택, 서플리먼트, 요양식(療法食), 펫의류, 웨어러블 디바이스(건강관리), 사진, 도그런(dog run), 테마파크, 동반여행, 트리밍, 장의(ペット葬儀), 펫호텔, 펫시터, 노견홈(老犬ホーム), 펫보험, 펫주택임대, 동반카페, 펫렌탈 등이 있다.⁹³⁾

91) 月刊 事業構想 編集部, “専門外で成功するペット産業, 市場規模は1.4兆円を突破 数字で見るペットビジネス”, 「事業構想」, 2017년 1月号,

(<https://www.projectdesign.jp/201701/pet-industry/003325.php> 최종검색일 2017.10.17).

92) 각 시장규모의 수치는 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의 ‘펫비즈니스마케팅 총람 2017(ペットビジネスマーケティング総覧2017年版)’를 참조한 강영기, 앞의 글, 103면.

93) PEDGE, “ペット産業の動向～市場規模、競争環境、主要プレイヤー”, 2017년 7월 27일 (<http://pedge.jp/reports/>)

II. 관련 법제

1. 체계

일본에서 동물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광역자치단체(各都道府県)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이를 흔히 “페트조례”(ペット条例)라고 부르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명)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즉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다르다.⁹⁴⁾

또한, 동물취급업(動物取扱業)에 대해서는 조례시행규칙(条例施行規則) 등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반려동물의 사육에 관해서는 「가정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家庭動物等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례 및 규칙의 규범적 연원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즉 이른바 “동물애호관리법”이다.

2. 동물애호관리법

(1) 제·개정

이 법은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을 애호하도록 하여 생명을 소중히 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단지 귀여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육함으로써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키우는 주인의 책임과 위험한 동물의 사양(飼養)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페트관련 점포 등이 지켜야만 하는 기준 등도 규정한다.

outline/, 최종검색일 2017.10.17)의 내용을 설명한 강영기, 앞의 글, 91면.

9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는 자신의 페트조례를 가지고 있다. 그 목록은 강영기, 앞의 글, 93-98면.

1973년에 제정된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크게 3차례 개정되어 현재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다. 우선 1999년 12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사육주의 책임 강화를 비롯하여 민관합동으로 사육주의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유식자를 활용하는 ‘동물애호추진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펫관련 점포 등의 동물취급업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해졌다. 그 후 2005년에 이루어진 개정에서 “동물취급업”은 등록제로 바뀌었으며, 마이크로칩과 같은 개체식별조치의 추진과 위험한 동물의 취급에 대해서도 규정되었다. 2012년의 개정에서는 영리성이 있는 영업뿐만 아니라 동물애호단체 등 영리성이 없는 동물의 취급도 규모에 따라서는 규제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펫관련 점포 등의 영리성이 있는 영업은 ‘제1종 동물취급업’이 되어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에 영리성이 없는 것은 ‘제2종 동물취급업’이라 불리며 신고제가 되어 있다. 제1종 동물취급업자 중 개와 고양이의 번식과 판매를 하는 자는 ‘개와 고양이(犬猫) 등 판매업’이라 부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2) 체계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원칙)
 - 제3조(보급계발)
 - 제4조(동물애호주간)
- 제2장 기본지침 등
 - 제5조(기본지침)
 - 제6조(동물애호관리추진계획)
- 제3장 동물의 적정한 취급
 - 제1절 총칙(제7조-제9조)
 - 제7조(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등)
 - 제8조(동물판매업자의 책무)
 - 제9조(지방공공단체의 조치)

제2절 제1종 동물취급업자(제10조-제24조)

제10조(제1종 동물취급업의 등록)

제11조(등록의 실시)

제12조(등록의 거부)

제13조(등록의 갱신)

제14조(변경신고)

제15조(제1종 동물취급업자 등록부의 열람)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17조(등록의 말소)

제18조(표식(表識)의 게시)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환경성령에의 위임)

제21조(기준준수의무)

제21조의2(감염성 질병의 예방)

제21조의3(동물을 취급하는 것이 곤란해진 경우의 양도 등)

제21조의4(판매시의 정보제공의 방법 등)

제22조(동물취급책임자)

제22조의2(개와 고양이(犬猫) 등 건강안전계획의 준수)

제22조의3(수의사 등과의 연계 확보)

제22조의4(평생돌봄(終生飼養)의 확보)

제22조의5(어린(幼齡)개와 고양이(犬猫)에 관한 판매 등의 제한)

제22조의6(개와 고양이(犬猫) 등의 개체에 관한 장부의 작성·비치 등)

제23조(권고 및 명령)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3절 제2종 동물취급업자(제24조의2-제24조의4)

제24조의2(제2종 동물취급업의 신고)

제24조의3(변경 신고)

제24조의4(준용규정)

제4절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치(제25조)

제25조

제5절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6조-제33조)

제26조(특정동물의 사양(飼養) 또는 보관의 허가)

제27조(허가의 기준)

제28조(변경의 허가 등)
제29조(허가의 취소)
제30조(환경성령에의 위임)
제31조(사양(飼養) 또는 보관의 방법)
제32조(특정동물 사양(飼養)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3조(보고 및 검사)
제6절 동물애호담당직원(제34조)
제34조
제4장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 등의 조치 등(제35조-39조)
제35조(개 및 고양이의 입양)
제36조(부상동물 등의 발견자의 통보조치)
제37조(개 및 고양이의 번식제한)
제38조(동물애호 추진원(推進員))
제39조(협의회)
제5장 잡칙(제40조-제43조)
제40조(동물을 죽이는 경우의 방법)
제41조(동물을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의 방법, 사후조치 등)
제41조의2(수의사에 의한 통보)
제41조의3(표창(表彰))
제41조의4(지방공공단체에의 정보제공 등)
제42조(경과조치)
제43조(심의회에의 의견 청취)
제6장 벌칙(제44조-제50조)
제44조~제50조 생략

(3) 반려동물관련산업에 관한 규정

이 법은 등록이 필요한 제1종 동물취급업의 7개 유형을 정하고 있다. 즉, 펫관련 점포나 번식업자, 펫호텔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의 지사(知事)와 정령(政令)에 따른 시장(市長)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이 필요한 ‘제1종 동물취급업’은 아래의 7종이다.

〈동물애호관리법상 “동물취급업”의 유형〉

업종	주요내용
판매업	동물의 도·소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번식·수입
보관업	페트호텔뿐만 아니라 동물을 맡아주면서 수행하는 미용과 페트시터(pet sitter) 포함
대여업	페트 대여업자나 텔런트 및 모델로서 촬영하는 경우 등
훈련업	동물을 맡아서 훈련, 출장훈련업자 포함
전시업	동물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물을 보여주는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이 대표적
경매 알선업	페트 경매업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에 의한 옥션은 불포함
양수 사양(飼養)업	늙은 개나 고양이(老犬·老猫) 등을 위한 노견홈 등 유상으로 동물을 맡아서 사양(飼養)하는 영업

등록은 점포 등 사업소마다 이루어지며, 하나의 점포에서 판매와 보관 등 복수의 업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마다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동물의 취급에 대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책임자를 사업소마다 두도록 강제하고 있고, 사양(飼養)시설의 구조와 규모,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조건도 규정되어 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갱신을 하여야 한다.

이들 동물취급업자가 지켜야할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동물의 관리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都道府県)의 지사(知事)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시(市)의 장(長)이 개선권고나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해당 업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거나 개선명령이나 업무정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내용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동물용 식품(pet food)에 관한 법령

일본의 경우도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완결적인 형태의 개별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물애호관리법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법의 명칭으로서 반려동물관련산업을 표방한 유일한 분야는 “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성령(省令)으로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⁹⁵⁾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⁹⁶⁾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민간사업자 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⁹⁷⁾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등 및 보고에 관한 성령 및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정하는 성령⁹⁸⁾ 등이 있다.

제4절 독일

I. 현황

독일에는 현재 3160만 마리의 반려동물(어류와 파충류 제외)이 독일 가정에 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19%는 최소한 2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아이를 가진 가정 중 61%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구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30%, 2인 가구가 36%, 3인 이상 가구의 34% 이다.⁹⁹⁾

95)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eibunkikaku.html (최종검색일 2017.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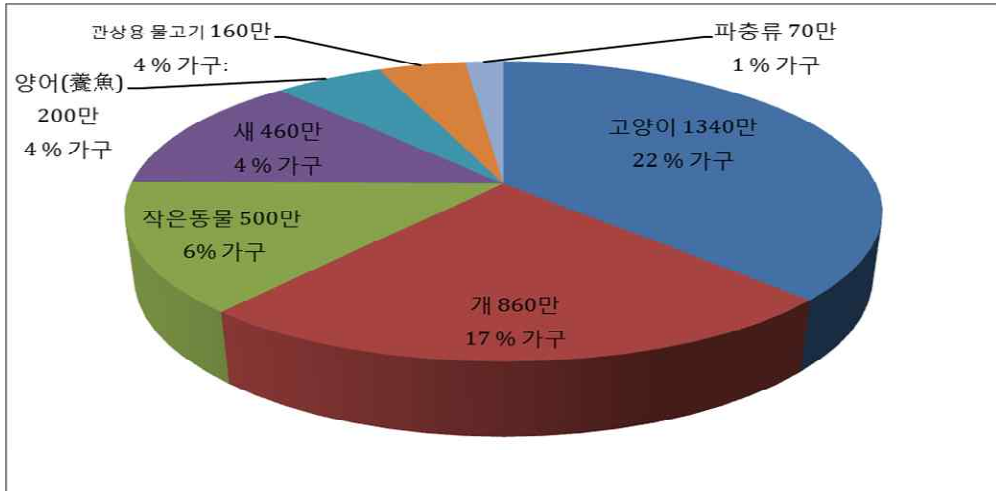
96)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kisoku.html (최종검색일 2017.10.31.).

97)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horei21_3.html (최종검색일 2017.10.31.).

98)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horei21_32.html (최종검색일 2017.10.31.).

99) 독일 반려동물 필요용품 산업협회(IVH: Industrieverband Heimtierbedarf), <https://www.ivh-online.de/> (최종검색일 2017.11.20.)의 2016년 보고서 참조..

〈독일 가구 내의 애완동물 비율〉



자료 : 독일 반려동물필요용품산업협회(IVH). <https://www.ivh-online.de/> (최종검색일 2017.11.20.)

(1) 용품 시장의 매출

유형	백만€	전년대비(%)
사료	3170	+ 0.4
필요용품과 부속품	977	+ 2.5
합계	4147	+ 0.9

(2) 사료 시장의 매출

① 개 사료

유형	백만€	전년대비(%)
습식 사료	432	+ 4.1
건조 사료	427	- 0.5
스낵	495	+ 3.3

유형	백만€	전년대비(%)
합계	1354	+ 2.3

② 고양이 사료

유형	백만€	전년대비(%)
습식 사료	1071	- 0.4
건조 사료	296	+/- 0.0
스낵	235	- 1.7
합계	1602	- 0.5

(3) 기타 관련용품과 부속품 시장의 매출

유형	백만€	전년대비(%)
개	182	+ 6.4
고양이	192	+ 3.8
고양이 모래	284	+ 5.6
새	35	- 7.9
물고기	182	- 1.6
작은 동물	102	- 2.9
합계	977	+ 2.5

(4) 판매경로에 따른 매출의 차이

판매경로	사료	필요용품과 부속품
마트 및 드럭스토어	65%	19%
애완동물 용품 전문매장	19%	81%

II. 관련 법제

유럽 차원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규범으로는 「애완동물과 동물의 국제적 운송에 대한 보호 및 농업목적의 동물사육과 식용동물 그리고 실험용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¹⁰⁰⁾ 및 「개가족과 고양이 가족의 반출과 반입의 금지에 대한 명령」¹⁰¹⁾이 있다.

독일 국내의 관련 법제로서 연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법(GG)」 제20a조(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가 “국가는 장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 하에,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하여 동물의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정하고 있다.¹⁰²⁾

개별 법률로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TierSchG)인데, 그 주요 체계는 기본원칙(제1장), 동물사육(제2장), 동물도살(제3장), 동물에 대한 개입조치(제4장), 동물실험(제5장), 동물보호관리인(제6장), 동물의 사육 및 취급(제7장), 동물 반·출입 금지, 거래금지, 사육금지(제8장), 동물보호를 위한 그 외 규정(제9장), 벌칙,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³⁾ 반려동물관련산업으로서는 “동물의 사육 및 취급”에 관한 제7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TierSchG) 제7장 동물 사육 및 유지 관리, 동물 거래

제11조

100) Fünf europäische Übereinkommen bezüglich des Schutz von Heimtieren, Tieren beim internationalen Transport, Tieren in landwirtschaftlicher Tierhaltung, Schlachttieren und zur Haltung von Versuchstieren.

101) Verordnung über das Verbot der Ein- und Ausfuhr von Hunde- und Katzenfellen(EG Nr. 1523/2007).

102) 독일 법령정보,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BJNR000010949.html> (최종검색일 2017.11.20.).

103) 독일 법령정보,

(Gliederung) -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 (최종검색일 2017.11.20.).

(Vorschriften) -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BJNR012770972.html> (최종검색일 2017.11.2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척추동물이나 두족류를 사육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a) 동물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것
 - b) 장기 또는 조직이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
2. 제6조제1항제2문제4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척추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 동물을 동물보호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관리하는 경우
4. 동물원 또는 동물을 전시하는 다른 시설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경우
5. 가축이 아닌 척추동물을 보상금 또는 기타 반대급부를 받고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거나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들여오거나 수입해야 하거나 들여왔거나 수입한 그와 같은 동물의 양도를 보상금이나 기타 반대급부를 받고 중개하는 경우
6. 제3자를 위한 보호의 목적으로 개를 교육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7. 제3자를 통한 동물 교환 및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8. 제1번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경우
 - a) 가축 및 양식 동물을 제외한 척추동물을 사육 또는 관리
 - b) 척추동물의 거래
 - c) 승마 또는 운송 업체 운영
 - d) 동물을 전시하거나 전시의 목적으로 제공
 - e) 유해한 동물로서의 척추동물 퇴치
 - f) 제3자를 위해 개를 훈련시키거나 동물 주인의 개 훈련 안내

변화하는 장소에서 동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제1문제4호 또는 제1문제8호d항에 따른 허가는 변화하는 장소에서의 전시가 제4항에 따른 법령을 근거로 금지되어 있는 종의 동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2) 연방정부는 제1항제1문의 경우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제1항제1문에 따른 허가 신청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2. 허가 발급의 조건 및 절차
 3. 허가의 내용, 제1항제1문제1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법률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됨
 4. 허가발급에 필수적인 사실이 추가로 변경된 경우의 절차, 이와 같은 변경사항의 보고 의무
- 제1문에 따른 법령은 제1항제1문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경우

연방교육연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제2a조제1항 또는 제4b조에 따른 법령에서는 유럽연합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언급된 요구 사항 외에 제1항제1문제1호에 따른 동물의 관리 또는 제1항제1문제1호에 따른 동물도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다.

1. 결합의 방지, 확인 및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2. 동물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그러한 동물의 적응 및 훈련 목적을 위한 조치
3. 간병, 돌봄 및 사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 또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 및 요청에 따라 관할 당국에 제공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4) 연방정부는 각 종의 동물이 상당한 통증, 질병 또는 손상이 있는 상태로 불안정한 장소에서 관리되거나 상당한 통증, 질병 또는 손상 하에서 불안정한 장소로 수송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 상원의 동의하에 법령을 통해서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문에 따른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제1문에 언급된 상당한 통증, 질병 또는 손상에 대하여 다른 규정, 특히 동물의 관리 또는 운송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문에 따른 법령을 공포할 수 있다.
2. 제1문에 따른 법령에서 법령 공포 시점에 관리되는 동물은 이러한 동물에서의 상당한 통증, 질병 또는 손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금지를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5) 제1항제1문에 따른 활동의 실행은 허가 발급 후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관할 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2문에서 언급된 기간은 허가 조건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범위와 난이도가 그렇게 정당화되는 한 최장 2개월 동안 관할 당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제2문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이유제시와 함께 기간연장을 통보 받아야 한다. 기한을 계산하는 경우 당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제2항제1문제1호를 근거로 공포된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관할 당국은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6) 상업적으로 야생동물 사육장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을 시작하기 4주전에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령을 통해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신고의 형식 및 내용
2. 제1문에 따른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조건
3. 신고된 사실이 나중에 변경될 경우의 절차

(7) 제5항제6문에 따라 또는 제6항제2문제2호에 따른 법령을 근거로 금지된 활동의 수행은 주무부처가 작업장 또는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다.

(8)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축을 유지 관리하는 회사 자체 감독을 통해 제2조에 따른 요구사항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제2조의 요구사항이 준수되었다는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동물 관련 특성(동물복지 지표)을 수집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11a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혈통과 소재 및 개, 고양이 및 영장류의 경우에는 동물의 보관 및 사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문제1호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2문제4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척추동물을 사육 또는 관리하거나 이러한 척추동물을 거래하는 경우

이는 사냥 또는 자연보호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록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연방정부는 연방교육연구부와 합의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유형, 형식 및 범위에 관하여 법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특정 시점에 기록을 실시한다는 것
2.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3. 기록 또는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4. 다른 법률 조항에 기초한 기록도 제1문에 따른 기록으로 간주된다는 것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고양이 또는 영장류를 사육하는 사람은 각 동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에 표시를 해야 한다.

1.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또는 동물의 조직이나 기관이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2문제4호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그 밖의 표시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연방정부는 연방교육연구부와 합의하여 연방 상원 동의를 받아 법령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제1문에 따른 표시의 방식 및 시기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당국의 감독 하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함을 규정할 수 있다.
2. 제1문제1호 또는 제2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개, 고양이 또는 영장류를 취득하는 경우 양수인은 제1문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으며 명시된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이 거래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4) 말, 소, 돼지, 양, 염소, 닭, 비둘기, 칠면조, 오리, 거위 및 물고기와는 다른 척추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관할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1. 동물실험에서 사용
2. 제4조제3항에 명시된 목적
3. 제6조제1항제2문제4호에 명시된 목적

제1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육된 동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2문에 따라 사육된 동물이 해당하는 상황에서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2. 해당하는 상황에서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제2문에 따라 사육되지 않은 동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수입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연방정부는 연방교육연구부 그리고 자연보전에 관한 경우에는 연방환경자연보호건설원자로 안전부와 합의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를 받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동물 또는 그 장기나 조직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학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해진 동물의 경우 그와 같은 동물을 제10조제1항제1문에 따른 업체나 시설 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관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법령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1b조

(1) 사육의 경우 사육에 관한 지식 또는 변형의 경우 생물 공학적 수단을 통한 변형이 관련된 지식을 고려하여 사육 또는 변형의 결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척추동물을 사육하거나 생물 공학적 수단을 통해 변형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후대에서 생물 공학적으로 변형된 동물 자체 또는 그 자손인 종의 적절한 신체 부위 또는 장기가 누락되거나 무능력해지거나 변형되어 통증, 질병 또는 손상이 발생 또는 후대에서

- a) 고통을 수반하는 유전성 행동장애 발생
- b) 같은 종과의 특수한 접촉 시 그들 모두 또는 한 종류의 동물에서 통증이나 예방이 가능한 질병 또는 손상이 발생
- c)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뿐만 또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 하에서만 사육이 가능하거나 사육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2) 관할 당국은 사육에 관한 지식 또는 생물 공학적 조치로 인한 변형에 관한 지식을 고려하여 그 자손에서 제1항에서 말하는 장애나 변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척추동물의 불임 기술을 지시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은 사육 또는 생물 공학적 조치를 통해 변형된 과학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척추동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연방정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를 받아 법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제1항에 따른 유전적 변화와 행동장애를 면밀히 규정할 수 있다.

특정 종, 품종 및 라인의 척추동물 사육으로 인해 제1항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c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만 16세까지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척추동물을 양도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중요한 하위의 법규명령으로서 「개의 보호에 관한 법규명령(Tierschutz-Hundeverordnung)」이 존재한다.¹⁰⁴⁾ 이 법규명령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사육에 대한 일반적 규정, 상업적 사육 중 보호에 관한 규정, 야외 사육에 대한 규정, 실내 사육에 대한 규정, 우리 사육에 대한 규정, 메어놓는 사육에 대한 규정, 사료주기와 돌봄, 일시적인 사육에 대한 예외, 공개적 전시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104) 독일 법령정보,

(Gliederung) -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huv/> (최종검색일 2017.11.20.)

(Vorschriften) -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huv/BJNR083800001.html> (최종검색일 2017.11.20.)

기타 법률로서 「동물교배법」(Tierzuchtgesetz, TierZG),¹⁰⁵⁾ 「동물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Arzneimittelgesetz, AMG)이 존재하며, 하위법령으로서 「동물의학 전문고용인의 교육에 관한 명령」,¹⁰⁶⁾ 「동물간병(돌봄)인의 교육에 관한 명령」,¹⁰⁷⁾ 「동물 간병(돌봄)전문가 자격증의 시험에 대한 명령」¹⁰⁸⁾ 등이 존재한다.

한편, 반려동물관련산업과 관련하여서는 “동물사료”에 관한 법률로서 「식료품, 필수품 및 사료법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LFGB)」이 존재하는데,¹⁰⁹⁾ 특히 제3장의 동물사료의 유통과 관련하여 금지사항(제17조), 보험(제17a조), 건강 관련 광고금지(제20조), 기타 금지 및 제한(제21조), 건강보호를 위한 전권 위임(제22조), 그 외 건강보호를 위한 전권 위임(제23조), 동물 건강보호와 동물 생산촉진을 위한 전권 위임(제23a조), 요구사항의 보장(제24조), 행정관청의 협력(제2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절 영국

EuroDev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은 7,000만 가구에서 최소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며, 경제규모가 2017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해 3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반려동물 제품 판매량 19% 증가가 예상되는 수치이다.¹¹⁰⁾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경우, EU 전체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210억 5000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¹¹¹⁾

105) 독일 법령정보,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 (최종검색일 2017.11.20.)

106) Verordnung über die Berufsausbildung zum Tiermedizinischen Fachangestellten/zur Tiermedizinischen Fachangestellten (TiermedFAngAusV)

107) Verordnung über die Berufsausbildung zum Tierpfleger/zur Tierpflegerin (TierpflAusV 2003).

108) Verordnung über die Prüfung zum anerkannten Abschluss Geprüfter Tierpflegemeister/Geprüfte Tierpflegemeisterin (TierpflMstrV 2009).

109) 독일 법령정보, <https://www.gesetze-im-internet.de/lfgb/>(최종검색일 2017.11.20.)

110) <https://www.eurodev.com/infographic-european-pet-industry/> (최종검색일 2017.11.08.).

111) 캐나다 농업·농식품부,

<http://www.agr.gc.ca/resources/prod/Internet-Internet/MISB-DGSIM/ATS-SEA/PDF/6730-eng.pdf> (최종검색일 2017.11.08.).

이 중 영국은 반려동물관련산업 중 용품 시장이 2015년 기준 52억 달러, 2016년은 7.2 퍼센트 증가한 5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용품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은 역시 반려동물 식품으로서 전체 시장 규모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¹¹²⁾

1. 생산·판매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영국은 「개 생산·판매에 관한 (복지)법 1999 (Breeding and Sale of Dogs (Welfare) Act 1999)」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즉, 반려견 생산 시설 및 판매 목적으로 개를 생산하는 부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12개월간 5마리 미만의 동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단순한 ‘취미 생산자’로 보고 허가 취득 요건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체 또한 각 지역 정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¹¹³⁾

2. 장묘

반려동물 매장시설은 동식물보건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매장 또는 화장 후 재를 뿌리는 시설에서는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 각 소재지에 따라 환경관리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매장 시설을 설립할 각 지역 정부에서 최소 규모, 시설 요건을 관리한다. 이러한 반려동물 매장시설에서는 소, 양, 염소, 돼지 등 축산 동물을 매장할 수 없다. 반려동물 매장시설에서 매장하는 동물의 사체는 ‘동물부산물(animal by-products)’로 간주된다.

112)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https://www.export.gov/article?id=Pet-Products-Market-in-the-UK> (최종검색일 2017.11.08.).

113) 영국 연방정부, <https://www.gov.uk/pet-shop-licence> (최종검색일 2017.11.08.).

3. 숙박

반려동물의 숙박에 관하여는 「동물 숙박시설업에 관한 법률(Animal Boarding Establishments Act 1963)」이 제정되어 있다.¹¹⁴⁾ 동물 숙박시설은 타인의 고양이와 개가 지낼 곳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숙박시설은 지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청은 시설허가의 신청 시 공간의 크기, 조명, 먹이, 물, 질병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4. 미용

영국에 미용에 관한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애견미용사협회(British Dog Groomers' Association)가 협회의 회원에 한하여 애견미용사 품질(자격)관리표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¹⁵⁾

웨일즈 주에서는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종사자의 요건과 시설에 관한 자체 규정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배포하고 있다.¹¹⁶⁾

제6절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규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된다.¹¹⁷⁾ 프랑스의 경우 최근 「반려동물의 매매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자 오르도낭스¹¹⁸⁾(Ordonnance n°2015-1243 du 7 octobre 2015

114) 영국 입법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3/43> (최종검색일 2017.11.08.).

115) 영국 반려동물산업연맹, <http://www.petcare.org.uk/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142-news/1410-the-pet-industry-federation-steps-in-to-fill-grooming-regulation-void> (최종검색일 2017.11.08.).

116) 웨일즈 주정부, <https://businesswales.gov.wales/sites/business-wales/files/Pet%20grooming%20service.pdf> (최종검색일 2017.11.08.).

117) 반려동물관련산업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곳은 프랑스(16,5%), 독일(16%), 영국(15,3%) 순이다. <https://www.eurodev.com/infographic-european-pet-industry/> (최종검색일 2017.11.08.)

118) 오르도낭스(Ordonnance)란 소위 “법률명령”이라 불리며,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으로서, 의회의 입법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입법행위를 말한다(프랑스 헌법제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해당 법전(Code), 즉 「농어업법전(Code de Rural et Pêche Maritime, CRPM)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때문에 법률명령으로서의 오르도낭스와 구체화입법으로서의 「농어업법전」의 내용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반려동물 매매 및 보호에 관한 법률명령(2015)

(1) 취지

프랑스에서 반려동물 시장은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에 쓰는 비용(반려동물, 반려동물 부대용품, 사료, 반려동물 옷 구매)이 늘어남에 따라 호황을 맞고 있으며, 이 산업의 경제 규모는 45억 유로(동물 건강관리, 돌봄, 꾸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물 밀수, EU 내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거래, 미신고 동물 사육, 동물 학대 및 유기 등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없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동물 매매가 흔한데, 동물의 매매에 있어서 「농어업법전」 제L214-8조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며, 많은 업자들이 인터넷에서 개인으로 가장하여 자치단체장에 하는 신고, 위생 규정 준수, 동물 보호와 같이 동물 매매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회피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7월에 반려동물 판매 부가가치세가 7%에서 20%로 오른 것도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고 한다.¹¹⁹⁾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 오르도낭스로 개와 고양이 사육기준의 재지정, 척추동물의 판매 및 양도 관련 법규, 금지 및 제한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려동물 매매규정을 강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다.

38조제1항).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568면.

119) 프랑스 법률정보 아이리스넷(반려동물 : 매매와 보호)

<http://www.net-iris.fr/veille-juridique/actualite/35014/animaux-de-compagnie-commerce-et-protection.php> (최종검색일 2017.11.06.)

<반려동물의 매매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자 오르도낭스>

목적 :

1. 개인이 소유한 개와 고양이의 번식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예방하여 바람직한 개와 고양이의 매매 환경을 만든다.
2. 판매자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동물에 관한 신문광고를 읽기 쉽게 하여 도(département,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 및 관리 효율을 높인다.
3. 개, 고양이의 매매에도 같은 위생 및 동물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 경쟁을 막는다.

(2) 주요 내용

이러한 목적을 지닌 오르도낭스의 시행을 위해 해당 부처는 긴밀한 협력과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¹²⁰⁾

① 사육 허가기준 재지정

농어업법전 제L214-6조에 따라 개, 고양이 사육의 기준을 새로 정한다. 이로써 판매되는 첫 번째 개와 고양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기준은 매매에 적용되며, 무상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모든 사육 동물 등록 의무화

신설된 제L214-6-2조 및 제L214-6-3조에 따라 상업등기소에의 영업 등록 의무를 명시한다. 즉, 동물을 사육하는 모든 사람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일련번호(SIREN)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반려동물 거래를 추적하기 위함이다.

③ “가정 내 육식동물” 사육능력증명서 발급 제한

교육의무와 조치에 대하여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제L214-6-1조, 제L214-6-2조 및 제

120) 열거된 사항 이외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학대하게 하는 자는 제L215-11조에 따라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이 처벌에는 동물과 관련된 활동 금지 및 소유 금지도 포함되었으며, 형사소송법전 제2-13조를 수정하여 동물보호협회의 권한을 정확히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동물보호협회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인이 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L214-6-3조에서 명시된 경제활동은 여전히 농업부장관이 자격을 인증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거쳐 교육수료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④ 혈통대장에 등록되는 아마추어 사육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L214-7조는 허가된 지역 외에서 개,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수정된다. 이는 충동구매와 반려동물 판매의 대중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⑤ 모든 유상거래에 있어 광고의 의무사항 강화

제L214-8-1조는 매매광고에 있어서의 의무사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번호(SIREN) 또는 한 배의 새끼번호를 광고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SIREN 번호로 광고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제L214-8조에 따라 모든 척추동물의 셀프서비스 판매¹²¹⁾를 금지하고, 개와 고양이의 양도에 있어 수의사 면허증 발급을 일원화한다.

2. 「농어업법전」 “반려동물” 편

위 2015년 10월 7일자 오르도낭스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법률 개정사항은 관련 법전인 「농어업법전(CRPM)」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되었다. 우선, 이 법전은 농촌의 개발 및 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의 공간적 개발(제1편), 식품 및 동식물 보건(제2편), 농업의 발전(제3편), 농촌임대차(제4편), 농업조직(제5편), 생산 및 판매(제6편), 사회보장(제7편), 농업개발 연구 및 교육(제8편), 어업 및 양식(제9편)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여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하여 집대성한 것이다.¹²²⁾

121) 여기서 셀프서비스판매(vente en libre-service)란 구매자가 상품을 고르고 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판매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거나 거의 접촉하지 않는 판매를 말한다.

122) 이 중 제2편은 다시 총칙, 동물 및 동물용품의 보호와 유통(제1장), 동물방역(제2장), 식품안전(제3장), 수의사(제4장), 식물보호(제5장) 등으로 체계가 구분되며, 제2장(동물방역)에 해당하는 “동물 및 동물용품의 보호와 유통”은 다시 가축과 포획되거나 길들여진 동물의 보호(제1절), 동물의 등록과 이동(제2절), 동물과 동물용품의 양도(제3절), 동물의 보호(제4절), 벌칙(제5절)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 및 동물용품의 보호와 유통”은 바로 제2편제1장제4절에 위치하는 일련의 규정으로서 조문의 번호가 214로 시작된다.

반려동물(animaux de compagnie)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제L214-6조에서 제L214-8-1조까지 자리 잡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³⁾

프랑스 농어업법전(Code de Rural et Pêche Maritime, CRPM)

제2편제1장제4절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제L214-6조

- I. 반려동물이라 함은 인간이 그 즐거움을 위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되어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 II. 보호소(refuge)라 함은 도(道)가 지정한 동물보호 재단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제L.211-24 및 제L.211-25조가 규정하는 보호 기한이 끝난 뒤에 동물보호소에서 나온 동물이나 주인이 넘긴 동물을 수용하여 돌보는 곳을 말한다.
- III. 개, 고양이의 사육이라 함은 번식할 수 있는 암컷을 적어도 한 마리 소유하는 활동이며, 그것이 낳은 개나 고양이 중 적어도 한 마리는 유상 양도해야 한다.
- IV. 본 절의 적용에 있어, 판매는 그 동물을 낳은 암컷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L214-6-1조

- I. 동물보관소나 보호소의 운영, 개와 고양이를 상업적으로 운송, 보호, 교육, 조련 및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1. 도(道)에 신고 대상이 된다.
 2. 동물 위생 및 보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된다.
 3. 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적어도 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농업부 장관이 작성하는 명부에 기재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할 것
 - 농업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반려동물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행동적 필요,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지식을 얻고 행정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을 것
 - 제L.214-6조제4항의 적용을 위해 행정 기관이 발급한 반려동물 매매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자 법률명령 제2015-1243호 공포 전부터 유효했던 자격증을 보유할 것

123) 프랑스 법령정보 사이트(농어업법전 반려동물 관련 규정)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sessionid=EAECDB469F0D7C0531963C2EB3B85EAC.tplgfr41s_1?idSectionTA=LEGISCTA000022200235&cidTexte=LEGITEXT000006071367&dateTexte=20171106(최종검색일 2017.11.06.)

EU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출신이 그러한 국가 중 한 국가의 영토에 설립한 업체의 영업 중 일시 및 임시로 프랑스에서 하는 영업에는 제L.204-1조 및 제L.204-2조가 적용된다. 집에서 기르는 다른 반려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행위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II. 전 제I항 또는 제L.214-6-2 및 제L.214-6-3조에서 언급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짖을 댕 개를 9마리 이상 소유하는 자는 이 법의 동물 위생 및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III.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동물보호협회 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만이 동물 의료 활동의 수단이 없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에게 무료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도(道)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위생요건 및 검사방법은 데크레(행정입법)으로 정한다.

IV. 개와 고양이 용변을 처리할 경우에는 동물 위생 및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제L214-6-2조

I. 제L.214-6조제3항에 따라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L.311-2-1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제L.214-6-1조제1항에서 열거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I. 1년에 과세 대상 세대별로 개나 고양이를 한 배 이상 유상으로 양도하지 않는 사육자에게는 제L.214-6-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이 면제된다.

III. 농업부장관이 인정한 혈통 대장(臺帳)에 등록하여 개와 고양이만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규정이 면제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하고 본 절의 규정이 위반되는 것을 단속하는 기관이 요구할 때 이를 해명하면서 개와 고양이를 유상 양도하면 본 조 1항이 규정하는 등록도 면제된다.

1. 1년에 과세 대상 세대별로 개나 고양이를 한 배 이상 팔지 않는다.

2. 농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혈통 대장에 신고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혈통 대장에 등록한 개나 고양이가 낳은 한 배 새끼의 번호,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낳은 배 전체의 번호를 받는다.

제L214-6-3조

제L.214-6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전 제L.123-1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제L.214-6-1조제1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L214-7조

개와 고양이, 다른 반려동물의 무상 또는 유상의 양도는 시장, 고물상, 전시회, 박람회 또는 동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른 모든 공개된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도(道)는 정해진 한 기간 또는 여러 기간 동안 동물만을 판매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장에서 판매 행위를 하는 업자가 개, 고양이 이외의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현행 동물 위생 및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 또는 다른 모든 공개 행사의 주최는 사전에 도(道)에 신고하고 공개 행사 시 동물 위생 및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L214-8조

척추동물의 셀프서비스판매는 금지된다.

I. 제L.214-6-1조부터 제L.214-6-3조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반려동물 판매에서는 인수자에게 동물이 인도되는 시점에 다음이 발급되어야 한다.

1. 양도증서
2. 반려동물의 성질,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 교육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
3. 개나 고양이의 판매에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의사 면허증
4. 영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양도증서의 효력을 지니는 청구서

본 조의 규정은 동물보호협회 또는 동물보호재단이 행하는 모든 무상 및 유상 양도에 적용된다.

II. 8주 이상 된 개와 고양이만을 무상 또는 유상 양도할 수 있다.

III. 농업부장관이 인정하는 혈통 대장에 등록된 개나 고양이만이 순종(純種)으로 불린다.

IV. I에 해당되지 않는 개나 고양이의 모든 양도에는 3. 수의사 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

제L214-8-1조

개나 고양이의 매매 광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동물의 나이
- 동물이 농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혈통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해당되는 경우, 각 동물의 ID 번호 또는 새끼를 낳은 암컷의 ID 번호, 한 배의 새끼 수

개나 고양이의 유상 양도 광고는 매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L.214-6-2조제1항과 제L.214-6-3조가 규정하는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제L.214-6-2조제3항을 만족하는 사육자는 농업부장관이 인정하는 혈통대장에 등록된 한 배 새끼들의 배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모든 무상 양도 광고는 기증 또는 무료 양도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7절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체가 지켜야 할) 동물복지법」¹²⁴⁾을 제정하였고 이는 2016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이 법은 반려동물산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동물 관리 방식의 최소 기준, 동물복지 차원에서 권장하는 우수기준 등을 정하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²⁵⁾

싱가포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동물복지법 (Code of Animal Welfare for Pet Industry)

1. 개요

1.1 입법취지

동물복지법은 싱가포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물 보호의 최소기준을 따르도록 보편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동물 및 조류법(Animals and Birds Act)」에 따라 농식품수의청(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동물복지법을 입법 및 시행하였다. 이 법은 반려동물의 동물소유자들에게 적용되며 이 법에 의하여 동물소유자는 동물보호의 의무를 진다. 이 법에 의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물소유자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동물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동물 및 조류법」 위반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1.2 동물복지

동물복지는 질병 예방, 수의학적 치료, 적절한 보호소, 관리, 영양, 인도적 처우 및 안락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의 복지 보장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124)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code-of-animal-welfare-\(for-the-pet-industry\)_issued-on-11-aug-2016.pdf?sfvrsn=2](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code-of-animal-welfare-(for-the-pet-industry)_issued-on-11-aug-2016.pdf?sfvrsn=2)

(최종검색일 2017.10.17.).

125)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인포그래픽 자료,

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ava-infographic_fa_english_lowres.pdf?sfvrsn=2 (최종검색일 2017.10.17.).

1.3 정의

- 소유자(Owner) : 동물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자
- 책임자(Person in charge) : 개인의 점유, 양육 또는 통제 하에 있거나 보호 또는 감독 하에 있는 동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소유한 자와 고용 기간 동안 이러한 동물을 소유한 자
- 수의사(Veterinarian) : 싱가포르에서 수의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

1.4 반려동물산업의 의무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당사자는 동물복지를 위한 최소기준 또는 실무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 조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법률의 이해

- 최소 기준 : 반려동물산업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동물 사육, 관리 및 보호의 최소 기준을 말한다.
- 실무 지침 : 동물복지 기준 및 반려동물산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지침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산업 관리

3.1. 사업자의 의무

- 최소 기준 :

소유자는 동물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특정 장소에 방치하거나 동물을 자신의 점유, 관리 또는 통제를 벗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물을 조련하는 소유자는 동물 조련 훈련을 받고 숙지해야 한다.

3.2 기록 보유

- 최소 기준 :

동물을 식별 가능(예 : 마이크로칩 사용)하고, 추적 가능하며, 적절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록을 포함한 기록은 최소 2년간 또는 사업 관련 동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3 해충 방제

- 최소 기준 :

외부 기생충 및 벼룩, 진드기, 파리, 이, 모기 및 야생 설치류 등의 질병매개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충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유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생충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수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해충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질병매개체 및 농약 관리법 2002(Control of Vectors and Pesticides Act, CVPA)」,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 물질을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 노동자와 동물 모두를 위하여 적절한 안전예방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동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보안

- 최소 기준 :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고 동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동물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화재 및 기타 비상사태 시 동물의 안전하고 적절한 대피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동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하거나 비상시 운영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4. 동물 주거 및 환경

4.1 사육장

- 최소 기준 :

사육장은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뒤집으며, 눕거나, 뒷다리를 똑바로 세워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하며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동물에게 충분한 쉼터와 그늘이 제공되어야 하고 사육장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어야 한다. 합사할 수 없는 동일한 종의 동물은 물론 다른 종의 동물들은 사육장을 분리하여야 한다. 늑거나 허약하거나 또는 공격적인 동물, 또는 젓먹이 새끼를 가진 동물을 위한 개별 사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병든 동물을 위한 별도의 사육장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동물의 수는 적절해야 한다.

4.2 환경

- 최소 기준 :

-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울 수 있는 악천후 및 기온으로부터 보호
- 공기정화를 위하여 항상 충분히 환기
- 안전과 청결 유지 및 동물 복지 증진

과도한 소음, 햇빛, 열, 습기 또는 외풍에 노출 금지.

4.3 시설관리

- 최소 기준 :

동물의 사육, 목욕, 털 관리 및 활동 장소는 매일 청소해야 하고 청소가 완료되면 사육장을 건조해야 한다. 사육장, 주변 시설 및 모든 관련 설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소독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사육장에 강아지나 새끼고양이 등 새로운 동물을 들이기 전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사료 준비 및 저장소, 사료 및 물의 용기, 기타 관련 도구는 위생적이어야 한다. 배수구는 매일 청소하여야 하고 세척 및 소독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5. 동물 관리

5.1 영양 공급

- 최소기준 :

종의 특성에 따라 건강과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균형 잡힌 사료를 정기적으로 먹여야 한다. 신선하고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상 제공하고 사료는 소변이나 대변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부패하거나 오염된 것으로 판정된 사료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5.2 사료 준비

- 최소기준 :

사료 및 물의 용기는 매일 청소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살아있는 먹이 외의 모든 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오염을 방지하고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5.3 복지 증진 활동

- 최소기준 :

매일 최소 2회 또는 동물의 종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충분한 공간과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 행위 :

- i) 다른 동물에 의하여 또는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 또는 상해;
- ii) 과도한 관찰 또는 조련
- iii)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동물과의 접촉
- iv)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필수 제공 :

- i) 적절한 수준의 일상적인 관심 / 검사, 먹이주기 및 운동;
- ii) 연령대 및 종의 특성에 따라 생리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활동 또는 장비
- iii) 운동 기회

친숙하지 않은 다른 종의 동물들이 함께 있을 경우 관리 감독해야 하고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해야 한다.

5.4 조련 및 운송

- 최소기준 :

운송 시 청결하고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동물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동물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 운송 중 과도한 비, 바람, 태양 또는 배출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운송 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트렁크 또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여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케이지 또는 캐리어는 견고하고 적당한 크기여야 하며, 서 있거나 누울 수 있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에 동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수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한 진정제를 사용할 수 없다. 동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은 안전하고 통풍이 원활하여야 한다. 동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케이지 및 캐리어는 매 사용 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6. 동물 건강 관리

6.1 건강 확인 및 기록

- 최소기준 :

최소 일 1회 모든 동물을 검사하여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중대한 질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즉시 수의사의 소견을 구해야 한다. 새로 도착한 동물과 건강 상 이상이 있는 동물은 격리되고 자주 검사하여야 한다. 사료 섭취, 수분 섭취, 배설, 운동, 휴식 등의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건강 상태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책임자 또는 수의사에게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상당한 동물은 우리에서 꺼내고 관리를 금지, 다른 동물과 격리시키며 수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

모든 동물은 소유권 이전에 앞서 내·외부 기생충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하여야 한다.

6.2 질병 예방

- 최소기준 :

반려동물업체는 백신 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충 및 곤충 통제 등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의 징후가 있는 동물을 위한 격리실/구역이 있어야 한다.

6.3 수의학적 주의 및 치료

- 최소기준 :

부상당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은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은 신속히 치료하여야 한다. 안락사는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기술적 훈련을 받은 수의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 및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락사 절차는 다른 동물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부록 A

A : 특정 종에 대한 최소기준 및 실무지침

- A1. 소개
- A2. 개
- A3. 고양이
- A4. 소포유동물(친칠라,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및 아귀)
- A5. 조류

부록 B

B : 반려동물 소매업체를 위한 최소기준 및 실무지침

- B1. 소개
- B2. 반려동물 소매사업 관리
- B3. 동물 판매

부록 C

C : 반려동물 조련사를 위한 최소기준 및 실무지침

- C1. 소개
- C2. 반려동물 미용사업 관리
- C3. 반려동물 털 관리(grooming) 및 털 손질(trimming)
- C4. 목욕 및 건조
- C5. 장비 및 시설

부록 D

D : 반려동물 사육자를 위한 최소기준 및 실무지침

- D1. 소개
- D2. 반려동물 사육사업 관리
- D3. 동물 사육
- D4. 사육 동물의 주거 보호 구역 요구 사항

부록 E

E : 반려동물 위탁자(boarder), 애완동물 돌보미(sitter) 및 반려동물 데이케어 제공자(provider)를 위한 최소기준 및 실무지침

E1. 소개

E2. 반려동물 위탁사업 관리

E3. 동물 위탁(boarding)

E4. 위탁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요건

제8절 시사점

1. 규범의 체계 및 성격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율을 어떠한 법적 체계 속에서 규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 대상 국가의 대부분들이 소위 “반려동물관련산업법”으로서 완결적인 형태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규정의 전체적 관점을 “동물보호”의 체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규범의 체계 내지 성격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는 “동물보호법”의 체계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규범으로서, 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상업적 취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목록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그 개별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반려동물관련 영업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사항으로서 동물보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반려동물의 개념 및 범위

대부분의 국가는 동물보호법의 체계 내에서 그 적용범위, 즉 보호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상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라 하여 특별히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반려동물 만을 위한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 반려동물을 “인간이 그 즐거움(agrément)을 위하여 보유(détenu)하거나 보유하게 된 모든 동물”(농어업법전 제L.214-6조)이라고 하여,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반려의 목적이 없는 경우라도 현재적 사실로서 보유하게 된 동물까지 반려동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규범이 적용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우리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보편적 반려동물로서 “개”, “고양이” 정도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통한 개체 수 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반려동물관련산업

대부분의 국가는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관련산업이라는 고유명사로서의 법률 용어도 아직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업을 “취급업자”로 분류하면서 7개 영업유형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있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제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생산”과 “판매”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기준 등을 제외한 기타의 영업방식에 관하여는 법령을 통하여 강제하기보다는 (위법하지 아니하는 한) 자율과 창의적 영업기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규율에 있어서 주요 외국의 법령에서 볼 수 있는 입법의 취지 내지 목적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가치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경시와 상업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적으로는 유기·분실동물, 동물학대 등의 문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며 일단 생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호와 복지가 보장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사육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선 반려동물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단순한 취미생산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미국, 영국),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보유 마리 수를 제한하거나 생산 마리 수를 제한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러한 반려동물의 생산을 반려동물 등록과 연계하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생산업자에 대하여 허가번호를 부여하거나(프랑스)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독일) 반려동물이 생산되는 경우에서부터 판매되고 이동되는 경로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생산의 기초가 되는 동물보호 내지 복지의 기준, 각종의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동물 자체의 보호, 예컨대 매매가 가능하기 위한 월령, 판매 장소 및 수단의 제한 등의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물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미국의 경우 일명 “강아지 레몬법”(Puppy Lemon Law)이 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원칙이 존재하는 점, 인간과 반려동물의 위생 및 안전을 위하여 각종의 제품에 대한 성분표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은 반려동물 자체의 보호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밖에 반려동물 충동구매 방지,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교육의무, 반려동물 등록 일련번호제, 광고제한 등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법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주요 외국 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이 「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어떻게 정비되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4장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쟁점 검토

제1절 제정방향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개별 영업별 검토사항

제4절 기 타

제4장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쟁점 검토

제1절 제정방향

I. 동물보호법과의 관계

1.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관련산업

반려동물관련산업에 관한 규범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법률의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입법이 되겠지만, 그 성격과 내용은 현행 「동물보호법」과 제 영업 규정으로부터 파생 또는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하고, ②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며, ③ 시·도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되 그 소요경비는 그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세·제각·단미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1991년 제정되었다.¹²⁶⁾

126)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1991년 제·개정이유

이 법은 전체적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영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5장 영업 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제32조), 영업의 등록(제33조), 영업의 신고(제34조), 영업의 승계(제35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6조), 교육(제37조), 등록취소 등(제38조)이다.

이들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시행규칙은 반려동물의 판매업, 수입업 및 생산업과 관련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두고 있으며(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이들 영업 외에 장묘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시행규칙 제43조). 그밖에 각종 영업에 대한 등록, 신고 등 행정사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동물보호법」 상 영업 관련 규정의 체계(2017.11. 현재)〉

법률(제5장 영업)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제34조(영업의 허가)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제35조(영업의 승계)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1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37조(교육)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동물보호법」이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반려동물관련산업인 영업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내용과 방식으로 규정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도적인 관점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가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그 업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만 거치면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별표9가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기준의 경우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체계와 통일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준이 과연 동물의 보호에 어느 정도 실효적일지, 혹시 영업을 하려는 자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들 수 있다.

<[별표 9]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개정 2017. 7. 3.>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또는 알선,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 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5) 쥐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7)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 1)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사육할 수 있는 설비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 가) 가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배
 - 나) 세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1.5배
 - 다) 높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높이
- 2) 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및 배수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설비의 경우 철망의 간격은 사육하는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리실

-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 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 2)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 1) 경매장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2) 경매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3) 경매장에는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경매장의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5) 경매장의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6) 경매장의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7) 경매장의 경매실에는 경매에 참가하는 자를 위한 좌석, 전광판, 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동물 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동물 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동물 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별표상의 기준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갖추기만 하면 되는 외양적인 기준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준만 충족하면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가 등 영업에 대한 처분 후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 내지 제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영업의 분야를 4개 영업에서 8개 영업으로 확대(2018.3.22 개정)하면서 그 영업에 대한 규율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아 반려동물에 대한 상업성을 부추이거나 강화하는 측면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외국들은 일부 반려동물관련산업을 「동물보호법」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규제” 내지 “제한”하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가축과 유사한 규제 프레임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동물보호 내지 복지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²⁷⁾

2. 「동물보호법」상 영업 관련 규정의 분리

그리하여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을 기준점으로 하고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제정 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그 규제수단의 내용과 강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동물보호라는 본연의 입법취지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한정되지 않은” 동물 일반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설계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영업에 대하여도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영업을 개설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보호 내지 복지의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27) 윤익준,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본 반려동물 연관산업법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10.13., 52면.

이러한 법체계적 조정의 과정은 입법수요가 높은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에 어려운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내지 복지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수단으로서의 규제와 지원 등을 별도의 입법, 즉 반려동물관련산업법으로 별도 구축하는 방식의 단계적 발전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다.

II. 법률의 목적, 성격 및 기본원칙

1. 목적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영업에 관하여서도 동물보호 내지 복지가 법령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입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자와 관련된 각종의 기준과 반려동물의 취급기준 등 개별적 사항은 반려동물관련산업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두 법은 별개의 체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제정법인 반려동물관련산업법 내지 반려동물산업법의 제정 목적은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과 사육 가정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있어서는 특별법적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2. 성격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은 관련 제도의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소위 “산업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입법례를 찾을 수 있다. 농림축산부 소관 법령만을 위주로 살펴보아도, 「말산업육성법」, 「종자산업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외식산업진흥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수에 이른다.

이들 법령은 특정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내지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관련산업법”과 차이가 있다. 물론 육성 내지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규제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초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칭)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계획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²⁸⁾ 이것은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반영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육성을 같이 규율하고자 하였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관련산업에 대한 규범 자체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육성” 내지 “지원”을 앞세우는 것은 건전한 취지 내지 의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전반적인 성격을 정하고 법률의 제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기본원칙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보호와 관리는 「동물보호법」의 강화를 통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부 산업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취지는 「동물보호법」의 틀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물보호법」은 제정 시부터 동물실험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최근 <제3장 동물실험>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는 장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된

128)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2016.7.7, 1면.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¹²⁹⁾ 이러한 발전방향은 반려동물에 대하여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포섭함으로써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하여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을 통하여 규율되도록 체계적 정합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기본적 원리 내지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 ①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범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일반 국민의 보건과 환경 및 경제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
- ② 반려동물은 인간과 일상생활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생’과 ‘안전’에 관한 한 인간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과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③ 위생과 안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기준)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 표준화는 적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개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규율은 각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Ⅲ. 입법골격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은 반려동물관련산업이 건전하게 정착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서, 일부 관계자들만 지켜야 하는 일방적인 규제수단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안전과 보건,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129)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실험동물법 제4조).

책무가 요구되며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세칙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이 시급하며,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정책 및 법제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 내지 규율대상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각 개별의 영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규제수단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업에 대한 규율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영업에서의 규율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개별 영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며 영업의 개설을 위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추상적 요건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한편, 영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거래의 신뢰 및 안정 확보가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반려동물관련산업은 반려동물이라는 특수한 대상, 즉 생명체를 매개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거래양상과는 다르며 그 특수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반려동물관련산업은 다양한 영업과 관련되며, 일부 직종은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 대한 신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증할 수 있는 제반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입법골격(안)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
- 기본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기반 조성
- 종합계획의 수립등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3장 반려동물관련산업
- 영업의 종류
 - 허가, 등록, 신고... (개별 영업별 행정수단)
 - 영업자의 준수사항
 - 교육
 - 허가취소 등
 - 점검 등
 - 사법경찰권¹³⁰⁾
- 제4장 지원
- 표시 및 인증
 - 전담기관의 지정
 - 계약의 표준화 지원
 - 우수업체 지원
 - 창업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협회, 사업자단체 등
- 제5장 보칙
- 출입·검사 등
 - 자료제출
 - 청문
 - 권한의 위임위탁
- 제6장 벌칙
- 벌칙
 - 양벌규정
 - 과태료

1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 공무원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상 동물보호에 관한 단속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적용범위

I. 반려동물

1. 개념 정의

“반려동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로서 그 개념적 표지로는 객관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육할 것과 주관적으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할 것을 요한다. 가정 내 사육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동물과 구별되며,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된다는 점에서 종축·부화·사육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산업동물)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야생동물을 가정에서 사육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야생동물 또는 산업동물을 종축 등의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도 가정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입법가능성

현행 동물 관련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객관적 표지와 주관적 표지를 추상화하는 방식과, 개념 자체의 설명 보다는 동물의 예를 열거하여 등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현행법상 각종 “동물”의 정의 방식〉

동물보호법		축산법	야생생물법
동물	반려동물	가축	야생생물(동물)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제2조(정의)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	제2조(정의)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

동물보호법		축산법	야생생물법
동물	반려동물	가축	야생생물(동물)
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생략)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반려동물의 “개념” 자체를 정하는 것과 (가칭)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의 “유형”이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구별된다. 즉,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라는 주관적 표지만으로 충분할 것이고 그 유형 내지 종류를 열거하거나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행 「동물보호법」과 같이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시행규칙 제35조)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정 동물군을 한정하여 열거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¹³¹⁾ 다시 말해, 이러한 반려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반려동물의 유형을 현재와 같이 제한하지 않는 방식은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 타당하다.

131) 장은혜, 「동물장모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8, 95-96면;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보도자료(2016.7.7.), 2면.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의 대상이 될 반려동물의 개념은 보호대상을 정하는 문제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관련산업은 일정한 경제적 규모와 비중이 갖추어진 “영업” 내지 “산업”으로서 업(業)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개념과 유형을 조류·파충류·어류 등까지도 포괄하여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조류·파충류·어류 등의 반려동물관련산업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반려동물관련산업을 제정하고자 하였던 그 필요성은 체계화되지 못한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과 판매,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동물의 유기방지 포함)에 대한 개선이 목적인데, 이들 조류·파충류·어류 등의 경우 산업규모도 작을뿐더러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황이 많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과연 이러한 유형의 반려동물에 현재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논의되고 있는 영업(생산, 판매, 사료및용품,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이들 동물 관련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영업간 형평성 및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류·파충류·어류 등의 반려동물들에 대하여는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영업 내지 취급에 대한 보호(복지) 및 관리의 일반적이고 원칙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반려동물관련산업법에 관한 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련산업의 대상인 반려동물은 현행과 같이 일정한 유형의 반려동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라면 오히려 “보편적” 반려동물로서 개와 고양이를 한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이 특히 개와 고양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II. 반려동물관련산업

1. 개념 정의

“반려동물관련산업”은 “반려동물의 생산, 사육 및 관리, 사후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체의 Lifecycle 전체를 감당하는 산업분야”이다.¹³²⁾ 즉,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번식을 통한 출생(생산업) 관리, 판매 및 입양 등 가정 내 수용관리, 가정 내의 가족구성원으로의 등록, 가정 내 생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¹³³⁾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보건과 안전의 측면에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영업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유형에 있어서 현행 「동물보호법」은 ①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② 동물판매업, ③ 동물수입업, ④ 동물생산업, ⑤ 동물전시업, ⑥ 동물위탁관리업, ⑦ 동물미용업, ⑧ 동물운송업을 열거하고 있다(제32조제1항). 그리고 이들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② 동물판매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③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④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2. 입법가능성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개념과 영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영업의 세부범위를 개별 영업의 분류명칭에 따라 현행과 같이

132)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 2016.12, 3면.

133) 윤익준, 앞의 글, 47면.

8개 구체적인 영업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영업에 대한 규율의 내용과 성격(규제적)으로 보아 이 목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추후 영업의 형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营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개별 영업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업”으로 언급하여 나열할 것인지, 아니면 “반려동물 관련서비스업”으로 포괄하며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는 개방하여 둘 것인지와 관계된다.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입법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 “산업법” 유형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정의규정에 “○○(산)업”에 대한 개념만을 추상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산)업”을 정의하기 보다는 개별 영업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그 전체를 아우르도록 개념 짓는 경우가 있다. 아래 대표적인 입법례를 대비하여 보면 비교적 특징과 장단점을 알 수 있다. 정의규정은 용어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의방식의 비교〉

개별 영업의 열거 방식(예:축산법)	산업 전체의 통칭 방식(예:곤충산업법)
<p>제2조(정의) 1.~3. 생략</p> <p>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p> <p>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 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p> <p>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p> <p>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또한, 이는 법령의 내용에 있어서 관련산업에 대한 행정적 규율사항을 어느 정도 밀도 있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즉,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개별 영업의 개성이 강하여 각 영업마다 시설 및 인력기준의 요건이 전혀 다르고 그에 따른 행정적 규율사항도 달라지는 경우 현재와 같이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법률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단지 원칙과 방향 정도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의 체계와 같이 부령으로 위임하고자 한다면 개별 영업을 분류하고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려동물관련산업법에서 일반적인 공통기준으로서의 시설 및 인력기준만을 제시하는 경우 반려동물관련산업 자체의 개념만 정의하고 구체적인 영업의 개념이나 내용까지 확정하지 아니하여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개별 영업별로 각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율밀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러한 개별 영업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함으로써 적용대상과 규율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3절 개별 영업별 검토사항

I. 생산(번식)

1. 개요

지난 2016년 5월 소위 ‘강아지공장’이라는 반려동물 생산업의 민낯이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노출되었다.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반자연적인 방식으로)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해 번식되어 판매되는 반려동물의 현실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필요성을 각인시킨 것이다.¹³⁴⁾

134) 윤익준, 앞의 글, 47면.

대규모 공장식 생산 및 사육의 방식은 그 대상이 산업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동물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하며, 산업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을 수 십 마리 단위로 번식, 사육, 판매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대량 사육 및 번식은 비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동물보호 내지 복지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최근의 살충제 달걀의 문제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적의 문제와 직결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유기동물의 증가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확실한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문제이다.¹³⁵⁾

이러한 논의에 따라 최근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개정되었다(제34조, 2017.3.21.개정). 즉,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생 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율은 20%에도 미달하였다.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어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결국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유 예기간을 거쳐 현재 미신고 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한 것이다.¹³⁶⁾

살아있는 생물 가운데 정서적 교류의 대상인 반려동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육 업을 단지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었다고 허용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안 없는 반대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생산업을 규범적 틀 내로 포섭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한 기준”과 “제한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세·열악한 반려동물 생산 환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5) 윤익준, 앞의 글, 48면.

136)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보도자료, 2016.7.7, 2면.

2. 입법가능성

(1) 개념 및 범위

반려동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적절한 표현인가. 「축산법」은 “축산업”이라는 개념 속에 “종축”과 “사육”을 구별하면서 종축은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사육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송아지와 관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동물의 경우 생산·공급자체를 국가의 생산안정사업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브리더(breeder)”, 즉 동물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사육하는 자의 의미가 더 정확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 또한 영업의 한 형태로서 “생산업”(제32조제1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판매업”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오히려 생산과 판매에 있어 영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생산”과 “판매”를 구별하여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목적은 그것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 자체 보다는 종국적으로 “판매”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는 시행규칙 제36조를 보더라도 “동물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동물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어 결국 판매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생산업과 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¹³⁷⁾ 따라서 생산업과 판매업을 구분하기 위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업은 판매하기 위하여 동물을

137)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의 업역을 영업행위의 내용과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업별 규정 적용시 행정실무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두 영업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정비비견(2016.11.3.)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2016.12), 14면.

번식시키는 영업으로, 판매업은 “원인을 불문하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영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이 “번식할 수 있는 암컷을 적어도 한 마리 이상 소유하고 그로부터 번식한 반려동물 중 한 마리 이상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매우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업”과 영업이 아닌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다. 즉, 판매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의료 및 심미적 이유에 따른)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생산이거나 취미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생산의 경우는, 일반적인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반려동물을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관련 산업법의 적용대상으로부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허가관련

반려동물 생산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개체 수를 정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특히 반려동물의 학대 및 유기동물의 증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유인적 요소가 되고 있다. 때문에 반려동물 생산업에 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보호자,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규율의 정도와 수단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업에 관하여 이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그 기준(예시)으로서 ①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현황, 동물의 종류, 마리수, 출산능력 없는 모견 등에 대한 관리방법, ② 사육 및 관리인원(80만리/인), 사육마리 수 제한(모견 100마리), 사육동물의 신체적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장 설치 등, ③ 생물학적·수의학적 임신·분만, 외과적 수술금지 규정 등, ④ 연 1회 이상 영업자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여부 점검, 기존 영업자에 대한 격년제 보수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¹³⁸⁾ 특히 반려동물의 특성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시설 표준모델”을 개발함과 동시

138)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2016.12), 16면.

에 개·보수자금 지원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어¹³⁹⁾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요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을 법률에 담고 어떠한 사항을 부령으로 할 것이며 행정규칙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인데, 입법 기준과 내용 등 규율방식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수범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소한 제도적 환경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집행자인 농림축산식품부로서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3) 반려동물등록과의 연계

생산업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등록에 대하여 제12조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②~⑤ 생략</p>	<p>제 8 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p>

139)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2016.12), 17면.

법률	시행규칙
	<p>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이 규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분실과 유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 규정으로만 보면, 등록대상동물이 무엇인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인지 수범자인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지 않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7조제2항제5호), 적발 및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월령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동물 판매업체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로 하여금 동물등록을 실시한 이후 판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⁴⁰⁾

이러한 동물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반려동물의 등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인간의 주민등록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주민등록이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주민등록법 제1조), 이러한 취지는 반려동물의 등록에 있어서 개체번호를 부여할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40)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 26면.

구체적으로, 동물의 등록에 관하여는 ① 등록의 “주체”(등록의무자를 생산자로 할 것인가, 판매자로 할 것인가, 소유자로 할 것인가), ② 등록의 “대상”(반려동물 전체로 할 것인가, 개·고양이로 한정할 것인가), ③ 등록의 “시기”(생산 내지 출생시점으로 할 것인가, 최초 판매 내지 경매시점으로 할 것인가, 소유자의 소유시점으로 할 것인가) ④ 등록의 “내용”(등록정보의 종류, 생물학적·의학적 출생정보 등),¹⁴¹⁾ ⑤ 등록의 “방식”(강제·임의, 칩·카드 등)에 대한 사항이 적어도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즉 그 수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정확하고 직접적인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반려동물의 등록을 연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등록을 판매자 또는 현행과 같이 소유자에 맡기는 경우 등록률이 저조하고 개체의 이력이 불명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생산자가 반려동물 생산단계에서 등록 및 개체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통계 내지 반려동물의 수 관리가 가능하며, 등록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동물보호 내지 복지에 근접할 수 있다.

II. 판매 및 유통

반려동물의 판매 내지 유통은 그 반려동물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산과 연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식으로 허가된 생산업체에 의한 생산의 경우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이 등록 등을 통하여 기록되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반려동물은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의 대상이 되며, 동물학대 및 유기, 비위생적 관리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141) 이러한 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의 사실 이미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별표상의 준수사항 제시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여기서의 정보제공은 동물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의 계약내용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률”로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농후하기 때문에, 판매와 유통 또한 생산과 마찬가지로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판매나 유통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은 판매 또는 유통되는 “방식”을 규율한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펫 숍에서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는 반려동물의 문제, 온라인이나 통신판매, 택배 배송,¹⁴²⁾ 대형 쇼핑몰에서의 반려동물의 판매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 및 유통, 운송과정 중에 반려동물의 건강악화, 폐사나 질병과 직결되며, 음성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¹⁴³⁾ 이러한 점에서 “척추동물에 있어서 구매자가 판매자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소위 셀프서비스판매(vente en libre-service, 비대면판매)는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입법례는 반려동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으로서 “직접대면”과 “(개체정보 등이 기재된) 계약서교환”은 반려동물의 판매에 대한 핵심적인 입법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구조에 있어 “경매장”은 생산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시설로서, 경매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은 반려동물 생산과 판매의 관리에 매우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렇게 반려동물 거래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살피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 및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거래구조를 재점검하고 그 과정에서의 관리기준과 방법, 관련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⁴⁾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거래 시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통산업을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이다.¹⁴⁵⁾

142) 2016년 8월 31일 표창원 의원 등 의원 64인이 반려동물 택배 금지를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재정부담과 판매업체의 영세함으로 인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143) 윤익준, 앞의 글, 44면.

144) 윤익준, 앞의 글, 45면.

145)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2016.12), 17-18면 및 윤익준, 앞의 글, 45면.

Ⅲ. 사료 및 용품

반려동물의 사료 및 용품은 앞에서 언급한 반려동물 자체의 생산 및 판매와는 달리 제품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동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영업이라기보다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현행 「동물보호법」이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는 유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있어서 사료 및 용품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동물의 사료에 관하여는 「사료관리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축산법의 대상이 동물 등에 대한 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기에 이 법을 반려동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이 법 개정하여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시키기에도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의 사료나 용품은 가정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제품은 인간의 식품 및 용품과 같은 환경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성분”과 “용법”이 인간에게 안전한지, 인간이 그러한 제품을 접촉하고 사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 유해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반려동물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도 안전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안전과 위생의 기준은 인간의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체계, 즉 「식품위생법」의 제도적 틀 속에서 실천되는 “제품표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 상 “표시”>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려동물의 식품에 관하여는 그 영양학적 가치로서 성분과 영양 요건 뿐 아니라 시설의 위생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용품의 경우 또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기준을 “어린이용”의 그것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참고할 만하다.

IV. 서비스

“서비스업”이라 할 때에 그 구체적인 양태는 특정하게 정하여지지 않고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개발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관한 서비스업의 경우 매우 다양하여 “서비스업”이라는 하나의 추상적 유형으로 규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연구자마다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구성 영역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차별성이 서비스업에서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동물미용업이나 동물장묘업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영역에 속하며 최근에는 동물숙박업, 동물훈련업 등도 점차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⁶⁾ 현행 「동물보호법」은 영업으로서 8개 영역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5개, 즉,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¹⁴⁷⁾

146)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비스업으로서 동물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놀이터, 애견카페 등을 추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 2016.12, 1면

147) “동물장묘업”에 관하여는 장은혜, 앞의 보고서, 2015. 참조.

우선, 현재와 같이 영업의 형태를 각 호로 나열(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에 관한 한 더 다양한 내용의 영업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라도 가급적营业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업을 하나의 서비스업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도 실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규율 수단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각 영업에 따라 갖추어져야 하는 다양한 물적·인적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영업마다 따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법률에서는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별적인 서비스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관련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영업과 차이점은 동물보호적 관점에서 규제수단이 개입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육성의 관점에서 영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최근과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반려동물관련 서비스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기 위한 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규제가 필요한 영역은 동물보호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시설”과 “인력”에 대한 것이며, 영업의 형태에 따라 시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인력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즉, 시설의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적 측면에서 각 영업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공간과 물적 시설기준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의 경우 또한 영업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결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동물서비스업으로서 동물진료업의 경우, 「수의사법」이 존재하며 이 법에 따른 수의사는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제2조제1호), 그러한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를 “동물병원”(제2조제4호)이라

말한다.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동물진료업은 그 공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서(제9조) 매년 국가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자만이(제8조) 동물병원을 개설하여(제17조)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경우 그 서비스주체의 자격이나 기능에 관하여 정하는 바가 없어, 반려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거래관계의 신뢰보장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반려동물관련산업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타서비스업에 대한 인적 자격 내지 기준을 과연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가의 문제는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의 자체적인 자격기준, 즉 일정한 교육 훈련과정과 시험을 거치면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라 한다(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 제17조). 이러한 민간자격이 남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공인을 할 수 있다(제19조 및 20조). 특히 반려동물관련 서비스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위생과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표준화된 능력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미용이나 훈련 등에 있어서는 그러한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격과 기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직업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우수자격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규제”와 함께 “육성”이 필요하다는 2중적 성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적 수단이 “인증”이다. 인증을 한다는 것은 곧 “표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을 정함으로써 인증 대상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¹⁴⁸⁾ 등의 사업자와 일반 국민의 관계에서 사업자가 품질의 보증을 위해 설정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⁴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반려동물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육성 목적을 인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수한 전문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인적 자격에 대하여는 법규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 자격이나 서비스의 방식과 품질 등에 대하여는 인증 등을 통하여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제4절 기 타

I. 표준계약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속에서 이루어지며 동물의 학대 및 유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성적·불법적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반려동물은 무한정 생산해 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며 사육 가정 내에서 생활을 공유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그 개체의 수와 건강상태 등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며, 그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과 판매의 방식과 제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직접 판매” 및 “정보 전달”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으로 존재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법적인 기초는 계약서 작성이라 할 것이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 즉 생산자(판매자) 및 관련 수의자 정보와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한 정보, 계약의 내용과 조건,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48) 일반적으로 인증의 대상은 “제품”이지만(「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1항) 현실에 있어서는 제품 또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하여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종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 입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10.13., 137면.

149) 최종권, 앞의 글, 135-136면.

이러한 계약서는 반려동물의 보호 내지 복지에서 뿐만 아니라 보호자(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거래관행이 자리 잡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내용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비하지 않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와 권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약관법 제19조의3)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 즉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권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별 자율적 추진사업에 대하여 특정의 행정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II.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고 관련산업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적 물적 관리체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의 5인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의 9인이 반려동물에 관한 제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반적인 동물보호와는 구별되는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에 특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민간과 함께 또는 민간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입법례 : 말산업육성법상 전담기관〉

법률	시행령
제9 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제3 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	시행령
<p>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축산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0명 이상일 것 나.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다.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말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20명 이상일 것 2.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말 전용 목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마장(馬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주로(走路) 등 말을 조련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말의 연구와 말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인력 및 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률	시행령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시책의 시행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Ⅲ.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여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을 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반려동물 관련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황은 반려동물의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¹⁵⁰⁾에 근거한 “총조사”에 반려동물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이 법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상 조사사항은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구총조사의 경우 ①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②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 이동에 관한 사항, ③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④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150) 통계법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기 때문에(제4조),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통계는 현재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의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에서 “수의업”, 「서비스업 조사」에서 “애완동물 장모 및 보호 서비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액 등이 있다. 이 외에 관세청 등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사료와 용품의 수출입 통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그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종의 자료는 대부분의 개별 조사주체(협회 또는 경제연구소)가 일정한 목적으로 수행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전체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로는 정확한 정책과 입법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계청의 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직접 통계조사가 어려운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생산현황, 유통현황, 판매현황 등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생산자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기초 통계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성통계의 정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본, 조사내용을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다.¹⁵¹⁾

151)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세부대책, 40면.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반려동물은 가정 내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서 야생동물이나 산업동물(가축)과 구별되며, 반려동물관련산업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하여 현재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관련된 영업(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 영업에 대한 등록요건(제33조), 허가요건(제34조), 영업승계(제35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6조), 교육(제37조), 등록 또는 허가취소(제38조), 영업자에 대한 점검(제38조의2)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은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동물보호의 원칙과 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호의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기준이나 내용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영업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동물을 대상 내지 수단으로 하는 영업을 자칫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로서는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거나 건전하게 발전시키기에 부족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과는 별개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별도의 법률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다양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즉,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 사육,

사후에 이르는 단계에서 각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동물보호, 공중위생, 생활환경보전 등의 의무를 기본으로 하며, 반려동물이 단순한 상품이나 객체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려동물관련산업을 육성(활성화)하거나 규제한다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법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실현수단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입법 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동물보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복지)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은 동물 중에서 특히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영업의 분야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동물 보호의 실천적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양자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인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은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과 사육가정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가장 주요한 제정사항으로는 반려동물의 개념과 범위, 반려동물관련산업의 유형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다양한 입법의 가능성이 있으며 장단점이 다르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입법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관련산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를 어떻게 적절하게 규율하는가에 있다.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거래와는 다른 양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려동물 모체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반려동물의 수, 유기동물의 방지 등 널리 사육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임무 내지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 높은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현행 「동물보호법」 상 별표에 기재된 영업 개설 요건으로서의 인력 및 시설기준 대부분은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 구체적인 사항들도 입법으로써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의 사료 및 용품의 제조와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이 문제되는데,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의식주를 공유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하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안전과 위생 뿐 아니라 보호자, 즉 사람에 대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안정성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품 표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관련서비스업은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에 일부의 영업으로 나열하거나 한정하기 보다는 어떠한 영업의 형태가 발생하더라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즉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규제와 함께 육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의 안정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인증,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신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반려동물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각종 정책과 입법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현황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통계제도를 확립하며,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입법 필요성의 근거로서는 주요 외국의 현황과 관련 법제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우리보다 일찍 동물의 보호에 관심을 두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의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제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어야 할 논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바, 우리의 입법이 되기까지 더 많은 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과 소위 반려동물관련산업법을 통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관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은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다양한 동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입법에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문헌

- 강영기,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산업과 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 10. 13.
- 김기철·정군우,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6.
- 김원태,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법령 제정안 마련”,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 10. 13.
- 김태성, 「반려동물 관련산업 시장동향과 전망」, 농협중앙회, 2019. 9. 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국민공감대 향상 - 2015년도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식조사 결과-”, 2015. 12. 18.
- _____,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2016. 7. 7.
- _____,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2016. 12.
- 대한수의사회,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2016. 1.
- 박주연,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7. 21.
- 송재일,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철학적 기초”,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7. 10. 13.
- _____, “글로벌 법제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분석 보고서 - 농업식량법 분야”, 한국법제연구원, 2016.

- 신정인 · 강영걸, “동물매개치료(AAT: Animal-Assisted Therapy)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용적 함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 55, 2016.
- 유기영, “서울시 반려동물센터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22, 2017. 1. 9.
- 윤익준,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본 반려동물 연관산업법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 10. 13.
- 장은혜,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8.
- 정태균, “반려동물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
론회 자료집, 2017. 7. 13.
- 지인배,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7. 13.
- 지인배 · 김현중 · 김원태 · 서강철,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중간검토세미나 자료, 2017. 6. 21.
- _____,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결과세미나 자료, 2017. 10. 24.
- 최종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7. 10. 13.
-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 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
미를 중심으로 - ”,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 사법정책연구원 · 강원대학
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7. 21.
-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 허민영,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소비자지향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 황명철 · 김태성,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NHERI리포트, 제215호, 농협경제
연구소, 2013. 4. 30.

황원경,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KB연구보고서, 2017. 7.

인터넷 자료

국제반려동물 화장협회,

http://c.yimcdn.com/sites/www.cremationassociation.org/resource/resmgr/about_canada/standards_of_practice_for_th.pdf(최종검색일 2017.11.08.)

뉴욕 주 농업부,

https://www.agriculture.ny.gov/AI/AILaws/Article_26_Circ_916_Cruelty_to_Animals.pdf(최종검색일 2017.11.20.)

뉴욕 주정부,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7/s1569/amendment/a>(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dos.ny.gov/licensing/lawbooks/PET-CEM.pdf>(최종검색일 2017.11.08.)

데일리개원,

<http://m.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최종검색일 2017.11.21.)

데일리벳,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필요성 설문조사, 79% ‘진료비 조사 필요해’”, 2017.01.10,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70609>(최종검색일 2017.10.26.)

독일 반려동물필요용품산업협회

<https://www.ivh-online.de/>(최종검색일 2017.11.20.)

독일 법령정보,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BJNR000010949.html>(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huv/>(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huv/BJNR083800001.html>(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gesetze-im-internet.de/tierschg/BJNR012770972.html>(최종검색일 2017.11.20.).

로드아일랜드 주정부, <https://legiscan.com/RI/bill/H6054/2017>(최종검색일 2017.11.20.).

미국 FDA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61884.pdf>
(최종검색일 2017.11.08.)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PetFood/default.htm>(최종검색일 2017.11.08.)

미국 각 주의 수의학서비스 관련 법규,

<https://www.avma.org/Advocacy/StateAndLocal/Resources/Pages/State-Legislative-Resources.aspx> (최종검색일 2017.11.20.).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서비스국,

<https://www.ams.usda.gov/services/auditing/feed-verification>(최종검색일 2017.11.08.)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국,

https://www.aphis.usda.gov/publications/animal_welfare/content/printable_version/faq_animal_dealers.pdf(최종검색일 2017.10.31.)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animalwelfare/sa_awa/ct_retail_pet_rule
(최종검색일 2017.10.31.)

미국 반려동물관련산업합동위원회,

<http://pijac.org/sites/default/files/pdfs/PetIndustryImpactsBriefingPaper2015.pdf>

(최종검색일 2017.10.31.)

<https://pijac.org/PPGSA-Standards>(최종검색일 2017.11.20.)

미국 사료협회, <http://petfood.aafco.org/Registration-Licensing>(최종검색일 2017.11.08.)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https://www.export.gov/article?id=Pet-Products-Market-in-the-UK>(최종검색일 2017.11.08.)

미국 수의학협회,

<https://www.avma.org/KB/Resources/Reference/Pages/VCPR.aspx>(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avma.org/Advocacy/StateAndLocal/Pages/veterinary-facilities.aspx>
(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avma.org/KB/Policies/Pages/Principles-of-Veterinary-Medical-Ethics-of-the-AVMA.aspx>(최종검색일 2017.11.20.)

미국 연방규정 포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3/09/18/2013-22616/animal-welfare-retail-pet-stores-and-licensing-exemptions>(최종검색일 2017.10.31.)

미국 통계청,

https://www.census.gov/eos/www/napcs/finalized/web_81291_final_reformatted_edited_US082208.pdf(최종검색일 2017.11.17.)

미국 펫리더십위원회,

<https://petleadershipcouncil.org/press-releases/new-study-pet-industry-is-economic-powerhouse>(최종검색일 2017.10.31.)

미국 환경보호청,

<https://publicaccess.zendesk.com/hc/en-us/articles/212071007-What-are-the-EPA-reg>

ulations-for-crematories-and-pathological-incinerators(최종검색일 2017.11.08.)

미시건대학교 동물법률·역사센터,

<https://www.animallaw.info/topic/table-state-commercial-pet-breeders-laws>(최종
검색일 2017.10.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1991년 제·개정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76&ancYd=19910531&ancNo=04379
&efYd=1991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76&ancYd=19910531&ancNo=04379&efYd=199107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종
접속일 2017.11.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반려동물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
=&tabNo=&query=](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nwYn=1§ion=&tabNo=&query=)(최종검색일2017.11.19.)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

[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
esses/code-of-animal-welfare-\(for-the-pet-industry\)_issued-on-11-aug-2016.pdf?sf
vrsn=2](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code-of-animal-welfare-(for-the-pet-industry)_issued-on-11-aug-2016.pdf?sfvrsn=2)(최종검색일 2017.10.17.)

[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
ses/ava-infographic_fa_english_lowres.pdf?sfvrsn=2](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tools-and-resources/resources-for-businesses/ava-infographic_fa_english_lowres.pdf?sfvrsn=2)(최종검색일 2017.10.17.)

영국 국제 농업·생명과학센터

[http://cabiblog.typepad.com/hand_picked/2016/11/one-health-and-the-economics-of-t
he-human-animal-bond.html](http://cabiblog.typepad.com/hand_picked/2016/11/one-health-and-the-economics-of-the-human-animal-bond.html)(최종검색일 2017.11.16.)

영국 반려동물산업연맹,

[http://www.petcare.org.uk/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142-news/1410
-the-pet-industry-federation-steps-in-to-fill-grooming-regulation-void](http://www.petcare.org.uk/index.php/component/content/article/142-news/1410-the-pet-industry-federation-steps-in-to-fill-grooming-regulation-void)(최종검색일
2017.11.08.)

영국 연방정부, <https://www.gov.uk/pet-shop-licence>(최종검색일 2017.11.08.)

영국 입법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63/43>(최종검색일 2017.11.08.)

오하이오 주 환경보호청,

http://ohioepa.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1077/~/ohio-epa-regulations-and-pet-crematory-business(최종검색일 2017.11.08.)

月刊 事業構想 編集部, “専門外で成功するペット産業, 市場規模は1.4兆円を突破
数字で見るペットビジネス”, 「事業構想」, 2017年1月号,

<https://www.projectdesign.jp/201701/pet-industry/003325.php>(최종검색일 2017.10.17.)

웨일즈 주정부,

<https://businesswales.gov.wales/sites/business-wales/files/Pet%20grooming%20service.pdf>(최종검색일 2017.11.08.)

일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kisoku.html(최종검색일 2017.10.31.)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eibunkikaku.html(최종검색일 2017.10.31.)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horei21_3.html(최종검색일 2017.10.31.)

http://www.famic.go.jp/ffis/pet/hourei/sub1_shorei21_32.html(최종검색일 2017.10.31.)

캐나다 농업 · 농식품부,

<http://www.agr.gc.ca/resources/prod/Internet-Internet/MISB-DGSIM/ATS-SEA/PDF/6730-eng.pdf>(최종검색일 2017.11.08.)

캘리포니아 주정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520160SB945(최종검색일 2017.11.08.)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120120SB969(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HSC&division=8.&title=&part=6.&chapter=&article=(최종검색일 2017.11.08.)

콜로라도 주정부,

<https://www.sos.state.co.us/CCR/GenerateRulePdf.do?ruleVersionId=5825&fileName=8%20CCR%201201-11>(최종검색일 2017.11.17.)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361381(최종검색일 2017.11.21.)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http://www.kipo.go.kr/kpo/user.tdf?seq=16471&c=1003&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atmenu=m03_01_02(최종검색일 2017.11.21.)

프랑스 법령정보(농어업법전 반려동물 관련 규정),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EAECDB469F0D7C0531963C2EB3B85EAC.tplgfr41s_1?idSectionTA=LEGISCTA000022200235&cidTexte=LEGITEXT000006071367&dateTexte=20171106(최종검색일 2017.11.06.)

프랑스 법령정보 아이리스넷(반려동물 : 매매와 보호),

<http://www.net-iris.fr/veille-juridique/actualite/35014/animaux-de-compagnie-commerce-et-protection.php>(최종검색일 2017.11.06.)

A.C.D. Bayvel, S.A. Rahman & A. Gavinelli, Animal Welfare: global issues, trends and

challenges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24 (2), http://boutique.oie.int/index.php?page=ficprod&id_produit=93&fichrech=1&lang=en&PHPSESSID=f57be0b329feb592fccdd25b793861ed(최종검색일 2017.10.17.)

AAFCO, http://www.aafco.org/Portals/0/SiteContent/Regulatory/State_Regulatory_Requirement_Summary.pdf?v2(최종검색일 2017.11.08.)

<http://www.aafco.org/Publications>(최종검색일 2017.11.08.)

APPA(미국반려동물산업협회),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law/lawlibrary_article.asp?topic=62(최종검색일 2017.11.20.)

http://www.americanpetproducts.org/press_industrytrends.as (최종검색일 2017.11.17.)

J.S.J. Odendaal, “Science-based assessment of animal welfare: companion animals”, 2005(최종검색일 2017.10.17.)

PEDGE, “ペット産業の動向～市場規模、競争環境、主要プレイヤー”, 2017年7月27日
<http://pedge.jp/reports/outline/>(최종검색일 2017.10.17.)

Professional Pet Grooming License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

http://study.com/articles/Professional_Pet_Grooming_License_and_Certification_Information.html(최종검색일 2017.11.20.)

기타

<https://www.eurodev.com/infographic-european-pet-industry/>(최종검색일 2017.11.08.)

<https://www.northshore.edu/academics/programs/asd/>(최종검색일 2017.11.20.)

<https://www.pennfoster.edu/programs-and-degrees/veterinary-studies/pet-grooming-certificate/>(최종검색일 2017.11.20.)

현안분석 2017-08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을 위한 기반마련 연구

2017년 11월 24일 인쇄

2017년 11월 24일 발행

발행인 | 이 익 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27-0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값 8,000원